2025-12 세무회계경영저널 K-ESG 실무 가이드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2025 12 Monthly Magazine

통 권 265호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K-ESG 실무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안세회계법인

안세 회계 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세회계법인

829-7557
829-7555

Anse, the Best Answer

eanse.com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PA 전문	1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회계감사	2 소속회계사 125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50명 활동
세무대리	3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재무자문	4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5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경영컨설팅	5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회계기장	6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창업지원	7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가업승계	8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증여상속팀·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종·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 · 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 · 고두환 · 고영일 · 권창현 · 김경수 · 김대현 · 김동욱 · 김봉수 · 김영룡 · 김옥철 · 김윤정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태준 · 김한솔 · 김현단 · 박규태 · 박병준 · 박윤종 · 박정렬 · 박형동 · 배익권 · 백애라 · 서병욱 · 서혜빈(수습) · 송형곤 · 양승민 · 오진탁 · 유진우 · 유성식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진수 · 이재권 · 이종량 · 이희건 · 임정훈 · 장용석 · 제갈원구 · 조민기 · 조영우 · 조완진 · 진수미 · 최영진 · 표정협 · 한상표 · 허정식 · 홍상연 · 홍희빈 · 황창연

서초(분실)	070-7668-6865 곽영미 · 박지은 · 선지우 · 이승환 · 이현섭 · 이혜리 · 정호신 · 박성민		
가산분실	02-6011-5517 설찬수 · 이남재 · 정 헌		
부산북(사상)	051-322-8321 공병진 · 윤재훈 · 이동계	서초명달지점	070-5101-1651 김용환 · 김수범 · 강용희
부산지점	051-819-3308 김수영 · 박지훈 · 이대건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신용목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김치현 · 홍영표 · 허정식	서초방배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장시연 · 이진성	강남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안영호 · 최정화
대전지점	042-525-5558 김형진 · 이상훈 · 정대환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오유준 · 김한우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센트럴지점(용산)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이원재 · 방수혁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김성우 · 강세련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울산지점	052-263-7006 방수혁 · 오승혁 · 장효철	중기(마포)	02-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 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12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거주자 각종소득 원천징수세율 ····· 2
✓주식양도세율 :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방법과 개인·법인 비교 ····· 3
✓스타트업 창업시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4
✓동업자·과점주주간 법인청산정리 방법론 쟁점 ····· 5

1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3기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수)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15(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22(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1(수)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2기분 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달의 세금신고 Checkpoint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 6

이달의 특집

✓K-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 9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11월) ·····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거주자 각종소득 원천징수세율

- 안세재경저널 2025/11/5일자 통권 1752호

과세표준		세율	비고
근로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일당 15만원 공제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사업소득	임의실적성과보수	3% (봉사료 5%)	외국인직업운동가 20%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이자	금융거래의 이자소득	14%	일반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온라인 금융업자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최고세율
	금융실명법 비실명소득 (차등과세)	90%	위법행위
배당	금융투자의 배당소득	14%	일반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최고세율
	금융실명법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위법행위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사적연금	3~5%	

기타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	2억원까지는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간이세액표)

⊙ 주식양도세율 :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방법과 개인·법인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5/11/12일자 통권 1753호

주식양도 소득과 적용세율 요약	① 세율 0% : 국내상장주식의 소액주주 장내거래차익 ② 세율 10% : 대주주 아닌 자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소액주주+중소기업) ③ 세율 20% : 대주주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 파생상품, 해외주식 ④ 세율 3억까지 20%, 3억 초과액 25%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⑤ 세율 30%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비중소기업의 주식양도차익
개인양도차익	주주가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세율은 상기 10%~30%만 적용되고,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이라 4대보험 적용 안됨
법인양도소득	• 법인명의 주식거래 이익 : 법인세율 20.9%(2억까지 9%, 2억 초과 19%, 통칭 20.9%) • 법인의 세후순이익 배당 : 종합소득에 합산(배당원천징수 14% 후 합산 6%~45% 적용) • 양도차익배당액에 4대보험 적용 : 노후배당으로 국민연금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됨 • 주식양도소득 5억인 경우 : (법인세 19% + 배당세율 78% × 40% + 4대보험 78% × 10%) × 1.1(지방소득세) ≒65%(최종)
법인자금 개인화	개인주식투자 사적운용시 법인공금유용임

개인자금 법인화	① 법인주식투자운용 위해 개인자금 가수금 차입 : 가능함. 개인으로는 양도세가 22%~33%이나, 법인경유소득이면 최종 합계 세금은 65%로 개인의 약 2~3배임 ② 법인의 원래 사업부가 심각한 결손인 경우만 성립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과 사업 손실로 대응상계되어 법인세와 배당금이 없으므로 세금부담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개인 자금의 법인대여 주식투자 양도소득방법은 극한상황에서만 성립됨

⊙ 스타트업 창업시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안세재경저널 2025/11/19일자 통권 1754호

개념구분	적용범위, 계산방법, 기타
감면내용	• 해당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기업 : 새로운 창업설립(해당 : 개인사업 외에 별도의 법인설립, 제외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존 사업의 양수·취득, 기존 운영사업의 폐업 후 재창업 등)
청년창업	①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창업자, 대표자 ② 창업 후 소득발생년부터 5년간 ③ 신규설립만 적용(업종 추가는 해당 안됨)
감면율	•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 : 100% •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부 : 50% • 청년 이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 : 50% • 청년 이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부 : 0% • 과밀억제권역 외부 →과밀억제권 내 이전 : 100% → 50%
감면업종	제조·건설업 등,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단, 도·소매업, 면허증업은 제외됨)
과밀억제권	서울 모두, 인천 대부분, 남양주시, 서울위성도시(하남, 고양, 구리,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의정부)

공동창업	• 개인사업자 : 손익분배비율 최대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함(손익분배비율 1:1이면 모두 청년이면 가능, 청년 아니면 제외) • 법인사업자 : 청년이면서 최대주주, 최대주주 다수면 모두 청년(청년이 단독대표면 적용, 공동대표가 청년 아니면 제외)

⊙ 동업자·과점주주간 법인청산정리 방법론 쟁점

- 안세재경저널 2025/11/26일자 통권 1755호

정리방법	대주주 갑 지분 70%, 소액주주 을 지분 30%인 경우 청산방법과 세금
합의청산	갑·을 주주간에 이의없이 합의하면 청산 가능(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없앰 : 청산법인세+청산배당세)
합의양도	갑·을 주주가 서로 화합 불가시, 지분 모두를 사모펀드나 제3자에 동시 양도(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경우)
각자 양도	주식회사 : 갑주주와 을주주는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 지분양도(주식양도소득세) (주식회사 아닌 경우 대주주라도 소액주주의 동의 하에 지분양도 가능)
대주주가 인수	대주주 갑이 회사주식평가액×30%를 소액주주에 지급하고 인수(주식양도소득세)
소액주주 인수	소액주주 을이 회사주식평가액×70% +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주식양도소득세)
자기 주식취득	회사가 갑·을의 지분을 적정평가하여 취득 후 자본소각 하거나, 다른 제3주주에 매각함
회사분할	각 주주가 회사에 인적분할 청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자산·부채 배부하고 , 서로 독립된 각 2개 법인 단독주주가 됨
자본 증·감자	자본 증·감자 결정하여 갑·을주주 일방만 증·감자 참여 유도(타방은 지분비율 감소하거나 지분매각함)
강제청산	대주주 갑의 단독결정으로 강제청산 : 소액주주 을의 청산불가 가처분 신청(강제청산으로 불이익 손해주주는 상대방에 손해보상청구함)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Checkpoint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1. 납부 개요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54만 명(1.7조)과 토지분 11만 명(3.6조), 총 63만 명(5.3조)에게 11.24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5.12.15.(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6.6.15.(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6.6.15.(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5년 기준 연 3.1%)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이달의 특 집

K-ESG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 -

Ⅰ. ESG 이해

01. ESG 개념 및 논의

1. ESG의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 2020.5.26. 제정

- (환경: Environmental)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전반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생물다양성, 수자원 사용,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등이 주요 주제
- (사회: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 (지배구조: Governance)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수립 및 운영 요소를 포함하며 이사회 다양성, 윤리 및 준법경영,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주주 권리 보호, 임원 보수정책 및 보상비율 등이 주요 주제

• (중요성) ESG는 단순한 경영 트렌드를 넘어 국내외에서 규제화·제도화되는 추세이며,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 및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의식이 고도화됨에 따

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됨

- (기업목적 측면) 기업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존립을 위해 ESG는 비즈니스 목적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목적에 통합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함
- (자본조달 측면) ESG가 리스크 관리 및 미래가치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자 그룹의 핵심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필수적 관리 요소가 됨
- (지속가능 측면) 지속가능성의 포괄적인 개념 하에 대두된 ESG 요소들은 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기반인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도 필수적 요소임

2. ESG 논의의 확산과 발전

• (등장 배경) ESG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987년 NEP(유엔환경계획)와 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됨

- 보고서에서는 인류가 빈곤과 인구 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ESG 논의 확산) 지속가능성 논의 이후 SG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연기금 등의 책임투자 논의 활성화, 정부 단위의 ESG 제도화,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ESG 활성화 논의로 확대

- (ESG 제도화) 주요국에서 국가 단위의 ESG 법안 마련 및 시행, 기업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화 논의 및 추진이 확산되고 있음

  * UN PRI(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발표('06)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재무정보공개 권고안(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발표('17)

  ** EU·미국·호주 등 주요국의 기후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의무화 EU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에 따른 기업 가치사슬 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식별 및 공개 의무화

- (ESG 활성화)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ESG 관점 투자 선언*을 통해 기업이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협·단체 차원의 민간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ESG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등 ESG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

  * 미국의 BRT(Business Roundtable)는 2019년 8월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주주 우선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

  ** 산업 및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결성된 글로벌 민간 이니셔티브는 산업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개별 기업에게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관리를 요구(전자, 자동차, ICT, 화학, 섬유 등 산업에서 ESG 리스크 완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

• (ESG 경영 내재화)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경영시스템 전반에 SG를 내재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니즈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자문/컨설팅/평가서비

스 시장이 확대
- 전 세계에 00여 개 이상의 서비스 기관이 ESG 평가 및 자문역할을 수행Sustainability, 2018)

02. ESG 주요동향

1. ESG 관련 국내외 동향

• 투자자·소비자·평가기관·정책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ESG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ESG정보공시가 제도화·고도화되고 있음. 또한, 공급망 관리 등의 이슈가 리스크로 대두되면서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
- (정보공시 요구) EU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25년 순차 적용 등 국내외로 ESG 공시 의무화 규제가 점차 확대
  · GRI Standards의 주제표준(Topic Standards) 및 산업표준(Sector Standards),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1·S2),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와 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ESG 정보 보고기준 및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추세
- (공급망 실사규제 확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24년 월 발효되면서 U 역내 기업뿐 아니라 U에 수출하는 역외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배터리 규제Battery Regulation)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삼림벌채규제(Deforestation-Free Regulation) 등 다양한 규제 내에 공급망 실사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관련 리스크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됨

2.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

• (ESRS) 2021년 4월 EU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발표, 2023년 7월 해당 지침 이행을 위한 공시표준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최종안 발표
- (적용대상 및 시기) 기업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보고기업은 중요성 평가 수행에 따라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ESRS 표준의 요구사항을 공시해야 함

<EU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보고대상 및 적용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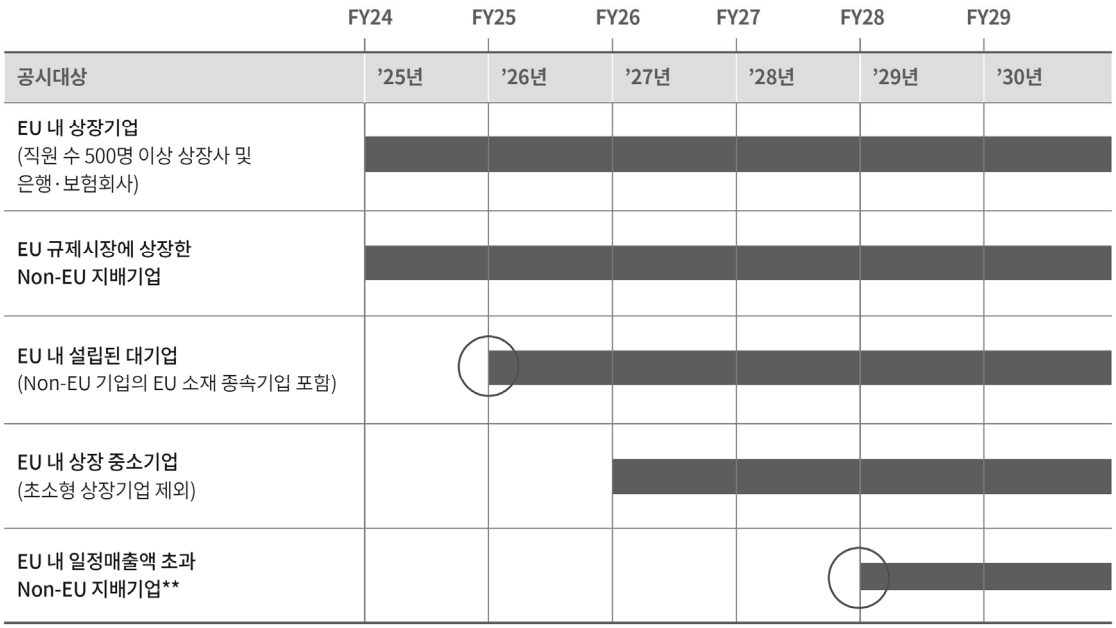

* "○" 한국 기업 의무공시 적용시점

** EU 내 2개년도 연속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서 EU 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보유

- (구성요소) ESRS은 2개의 공통 표준과 11개의 ESG 주제 표준(E1~E5, S1~S4, G1~G2)으로 구성된 총 13개의 표준으로 구성

<ESRS 구성요소>

공통표준 (Cross-cutting standards)	[ESRS 1] 일반 요구사항 [ESRS 2] 일반 공시사항: 지배구조, 전략, 영향·위험·기회 관리중요성 평가, 지표 및 목표		
주제표준 (Topical standards)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RS E1] 기후변화 [ESRS E2] 환경오염 [ESRS E3] 수자원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ESRS S1] 자체 임직원 [ESRS S2] 가치사슬 임직원 [ESRS S3] 지역사회 [ESRS S4] 소비자·최종 사용자	[ESRS G1]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ESRS G2] 비즈니스 수행

- (주요특징)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
  ① (이중 중대성 평가) 기업 관련 지속가능성 이슈가 미치는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 및 '재무적 중대성 (Financial Materiality)'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 요구

② (가치사슬 보고) 중대한 영향, 위험·기회 관련 정보에는 가치사슬을 포함해야 하는데 타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면 업종 평균 데이터나 기타 합리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보의 추정 요구

③ (TCFD 프레임워크 반영) ESRS 2(일반 공시사항)는 TCFD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 전략, 영향, 위험·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 관련 정보공시 요구

④ (ESG 주제 표준 공시) 주제 표준은 '환경'(5개 주제 32개 지표, '사회'(4개 주제 32개 지표, '거버넌스'(2개 주제 6개 지표) 관련 공시를 요구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가치사슬 내 근로자 등 최근 논의되는 ESG주제를 폭넓게 수용

- (IFRS) 2023년 6월, 미국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FRS S1(일반 요구사항) 및 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
  - (적용대상 및 시기) IFRS S1, S2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나 해당 기준의 시행과 의무화는 각국 관할 당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1, S2)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구성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전략·위험 관리·지표 및 목표' 공시 요구사항 규정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기간에 적용(FY 2024), 2025년부터 공시시작(우리나라는 2026년 이후 공시의무화 추진 예정이나 법정 공시 시점 및 기준 미정)
공시 방법	• 일반목적 재무보고서(ex.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특징	• TCFD 권고사항을 통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와 관련된 가지 핵심요소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공시 요구 • 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가능성 보장 노력 • 적용 첫해는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Scope 3 정보 미공시 허용 • 적용 첫해는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보고 시점에 공시 허용

  - (구성요소) IFRS 공시기준은 2개의 공시기준(S1, S2)과 각 기준별 4개의 필러(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로 구성

<IFRS 구성요소>

IFRS S1		IFRS S2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요구사항	
거버넌스	전략	거버넌스	전략
• 이사회 책임과 역할 • 경영진 책임과 역할	• 관련 위험과 기회 •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책임자 • 산하 책임조직 • 관련 역량	• 직접 대응전략 • 간접 대응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 위험과 기회 식별 • 우선순위 평가 • 모니터링 방법	• 성과관리 지표 • 성과달성 목표	•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 기회 식별·평가·관리 • 변경사항 보고	• 공통지표 • 산업특화지표 • 기후 관련 목표

- (주요특징) IFRS 정보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포괄적 기준선 제공, 여타 정보공시 기준과 연계, 업종특성 반영 등이 주요 특징

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요구

② (모든 위험 및 기회 식별) 단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포함

③ (4가지 핵심요소 공시 요구) 지속가능성, 기후에 대한 위험 및 기회 관련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공시

<IFRS 공시 핵심요소>

구분	주요내용
거버넌스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전략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위험 관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화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기업 자체 설정 목표, 법·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목표 관련 진행 상황 포함

④ (업종 공통과 특화지표 구분) IFRS S2(기후 관련 공시)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업종별 사업모델·활동 관련 특화지표 구분

❶ 업종전반 지표 (업종 무관 공통 지표)	•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첫 해는 Scope 3 공시 제외 가능) -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에 따라 측정 - GHG 프로토콜 가치사슬 기준 Scope 3 배출량 범주 15개 고려 - Scope 3 측정 시 과도한 비용과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정보 필요 •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과 비율 •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과 비율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본 지출, 자금 조달 또는 투자액 • 배출 비용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내부 탄소 가격 • 기후 관련 사항과 연계된 임원 및 경영진 보상
❷ 업종기반 지표	• 업종별 사업모델 및 활동과 관련된 업종기반 지표 공시 - 'IFRS S2 이행에 대한 업종기반 지침S2 부속 지침 참조 필요
❸ 기후 관련 목표	• 기업 자체 설정 목표 및 법/규제에 따른 기후 관련 목표 - 각 목표의 특성, 목표가 설정 및 검토되는 방법, 성과 정보 - 기후 변화 관련 최신 국제 협약이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해당 협약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약정 포함) - 배출량 목표가 총 배출량인지 순 배출량인지 명시 필요 (순 배출량 목표 공시 시, 총 배출량 목표와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 포함 필요)

- (SEC) 2024년 월, 미국 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이 발효되었으며, 보고기업은 기후 리스크 관리 방안 및 관련 재무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2024년도 기준 소송 등으로 의무화 도입은 보류된 상황임
  - (적용대상 및 시기)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미국 SEC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공시 시기는 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구성요소) SEC 기후 관련 공시규칙은 크게 'Regulation S-K(기후 관련 정보공시'와 egulation S-X(재무제표 주석공시)'로 구성
    ① (Regulation S-K) 기업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및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에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여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요구
    ② (Regulation S-X) 재무제표에 재무적 영향, 비용 지출 지표, 재무 추정치 및 가정 등 기후 관련 주석공시를 요구
  - (주요특징)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 및 전망에 미치는 기후 관련 영향, 기후 위험 관리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재무제표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함

3. ESG 공급망 실사규제 동향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보고대상 기업이 가치사슬 내 환경 및 인권 리스크를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로 2024년 월 최종안이 발표됨

- (적용대상 및 시기) 역내/역외 및 일반/로열티 수익 등 기업 분류와 직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EU 회원국별로 해당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할 예정

<EU CSDDD 적용 대상>

역내		역외	
일반	로열티 수익	일반	로열티 수익
• 글로벌 순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이상 • 직원 수 1,000명 이상	• 역내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이상 • 글로벌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이상	• EU 역내 순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이상(직원 수 무관)	• 역내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이상 • EU 역내 순 매출액 8,000만 유로 이상
또는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EU CSDDD 적용 시기>

구분		2027년부터	2028년부터	2029년부터
역내 기업	직원 수	5천 명 초과	3천 명 초과	1천 명 초과
	순 매출액 (전 세계)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기업	순 매출액 (EU 역내)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 (EU 배터리 규정)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U 내 배터리 수입 기업은 자사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업스트림 역외기업에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규정은 2024년 2월 시행되었으나 2025년 8월까지 실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준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

* 대상 제품 휴대용 배터리 용량 2kWh 이상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경량운송용(LMT) 배터리 시동·점화용(SLI) 배터리 등

• (EU 핵심원자재법) EU 역내 주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규제로 2024년 2월 발효되었으며, 전략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역내 대기업에 공급망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의무가 부과됨

* 핵심원자재(34개): 안티몬 비소 보크사이트알루미나알루미늄 중정석 베릴륨 비스무트 붕소 코발트 원료탄 구리 장석,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헬륨, 중희토류 원소, 경희토류 원소, 리튬, 마그네슘, 망간, 흑연, 니켈(배터리급), 니오븀, 인광석, 인, 백금류 금속, 스칸듐, 실리콘 메탈, 스트론튬, 탄탈륨, 티타늄 금속, 텅스텐, 바나듐

** 전략원자재(17개): 보크사이트/알루미나/알루미늄, 비스무트, 붕소(야금등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배터리 등급), 마그네슘 메탈, 망간(배터리 등급), 흑연(배터리 등급), 니켈(배터리 등급), 백

금류 금속, 자석용 희토류 원소, 실리콘 메탈, 티타늄, 텅스텐

- (EU 삼림벌채 규제) 2025년 2월 발효 예정이며, 규정 대상 품목을 U 내에 제공·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내 삼림벌채 실사를 수행하고, 위성 이미지·GPS 데이터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제품이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 규정 대상 품목 소고기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 (EU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 원자재 채굴, 수확, 제조, 유통 등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이 EU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으로, 2024년 4월 채택되어 2027년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4. 책임투자 등 기관투자자의 ESG 동향

- 전세계적으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보편화되었으나 투자규모는 다소 감소
  - 2022년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는 30조 3,000억 달러로 2020년 35조 3000억 달러에서 다소 감소
  - 미국 외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지속가능한 투자 규모는 2020년 1만 8,220달러에서 2만 1,921달러로 약 20% 성장
  - 미국의 지속가능한 투자 규모는 2020년 1만 7,081달러에서 2022년 약 8,400달러로 감소
  - 지속가능한 글로벌 투자의 주요 전략 및 유형은 기업 참여와 주주행동, ESG 통합, 네거티브 스크리닝순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22.

- 국내 연기금 ESG 투자 확대되어 옴
  - 국민연금은 2015년 「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책임투자 근거 조항을 마련한 이후 책임투자 조항 신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책임투자 조직 확대 개편 등 지속적으로 ESG 투자 기반을 강화
  - 국민연금의 2023년 ESG 투자 규모는 587조 원으로 2021년 대비 4.5배 증가

  * 2022 한국 ESG 금융 백서, KOSIF, 2023.

5.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ESG 동향

- (자산운용사)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금리, 정치적 압력 등의 이유로 ESG 펀드 자금 유출이 증가했으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ESG 투자는 지속
  - (BlackRock) 2022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 ESG 펀드 운용자산이 53% 증가하는 등 ESG 투자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 Morningstar Direct

  - (Vanguard)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산림, 수자원, 보건, 포용적 금융 등 테마투자 운용에 기업의 ESG 정보를 활용
- (신용평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역시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

가기준을 강화하는 추세

- (S&P) 일반 평가기준 및 62개 산업별 위험·기회 평가를 합산해 평가하며 각 데이터 포인트를 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점수로 변환
  * The Sustainability Yearbook, 2023 (https://www.spglobal.com/en)
- (Moody's) 자체적인 ESG 평가 지표를 활용해 신용평가등급에 통합·적용
  * Moody's ESG&Climate risk (https://www.moodys.com)
- (Fitch Ratings) 106개 부문 14~15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 ESG 위험을 식별 및 평가
  * Fitch Ratings (https://www.fitchratings.com/topics/esg/products)

6. ESG 평가기관 동향

•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
  - 2000년 이후 ESG 규율 확산과 함께 공적자금연기금 등, 신용평가사 기관투자가 등을 중심으로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
• ESG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수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를 매년 최신화하고 있는 추세
  - 평가기관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굴해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방법들을 고도화하고 있음
• 공급망 관련 ESG 평가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Apple, BMW, VolksWagen 등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가 확대 및 강화되면서 공급망 관련 ESG 평가가 활성화
  - EcoVadis는 글로벌 기업 가치사슬 내에 있는 공급업체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평가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
  - 국내기업 또한 공급망 대상 ESG 평가를 도입하고 공급망 ESG 리스크의 관리·지원을 고도화하는 추세
  - 중소기업 ESG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모델 연구개발을 활성화
• 국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발표
  - ESG 평가기관 역할이 확대되면서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 평가체계 투명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
  - 이에 따라 2023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SG 평가기관 가이던스」발표
  - 현재 자율 규제로서 운영 중이며, 추후 가이던스의 역할 및 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법제화 검토 예정

7. 공공·민간 ESG 이니셔티브 동향

-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는 기업과 조직의 ESG 활동 추진 및 고도화를 돕는 정보공개 원칙·지침·지표·방법론 등을 제시하며,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기업 및 자본시장의 ESG 확산 및 강화에 기여
  - (UNGC) 조직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초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조직이 준수해야 할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제시
  - (UN SDGs)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도록 17개 분야, 169개 세부 목표 제시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pple, HP, Dell 등 전자제품 산업의 가치사슬(생산~소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했으며, 최근 자동차·항공·ICT 등으로 가입 대상 산업을 확장
  - (Drive Sustainability) BMW, Volvo, Daimler, Toyota 등 완성차 산업의 조달·생산·유통 단계에 잠재된 환경·사회 이슈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완성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 (Plastic Economy, NaturALL Bottle Alliance)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을 진행
  - (Renewable Energy 100, Science Based Targets)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배출량 관리 방법론을 개발 및 확산하는 데 집중
  -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지침(Guidance)과 지표(Indicators), 핵심이슈(Material Issues) 등을 제시
- 산업별, 이슈별 이니셔티브는 조직의 자율적 참여 방식에서 강제적 규약 방식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으며, ESG 성과를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

03. 국내 ESG 대응 현황

1. (정부)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 연기금의 ESG 투자 확대 요구 등 시장 전반에서 ESG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공시, 기후 관련 공시,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로 구성된 공개초안 발표, 향후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
- (밸류업 공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제출 보고서부터 밸류업 계획의 공시 여부와 접근방법,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

2. (투자시장)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지속되는 추세

- (ESG 펀드) 2023년 말 기준 국내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5조7,576억 원으로, 2021년 7조 2,406억 원에서 2022년 5조 6,250억 원으로 대폭 감소 후 반등
  * 2023년 하반기 ESG 펀드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 서스틴베스트 2024.
- (연기금 및 금융기관) ESG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상품 출시 등 SG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추진 중

3. (기업·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SG를 대응

- (기업일반) 주요 대기업 등은 ESG 관련 정책 및 목표를 선언하고, 가치사슬 내 자회사·공급망·협력사의 ESG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를 수립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은 경영부담(인력, 비용)으로 인해 전반적인 ESG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ESG 규제 및 평가 요구 확대로 점차 대응 필요성이 강화됨
- (수출기업) 주요국의 ESG 규제 및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 글로벌 원청기업의 ESG 준수 요구 심화에 따라 ESG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경제단체 등) ESG 위원회 설립, ESG 관련 교육 및 포럼 개최, ESG 규제 모니터링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ESG대응을 지원

4. (ESG 서비스) 민간 컨설팅·신용평가·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교육·평가에 참여하며 ESG 서비스 생태계가 성숙

- 국내 컨설팅 기관 및 신용평가, 언론사 등은 각각 ESG 전담 부서 신설 및 관련 서비스 확대를 통해 ESG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II. K-ESG 가이드라인 개요

01. K-ESG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본 ESG 가이드라인은 산업발전법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근거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중점과제로서 개발됨. 특히, 중견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그 협력기업인 중소기업들이 ESG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권장

1. 국내외 ESG 경영요구 증대

- 기업평가에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S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공시 요구도 법/제도를 통해 규범화되고 있음
- 투자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금융자산운용사, 연금기금 등이 확대되는 추세
- 구매계약 측면에서 공급망 실사법 등 고객-원청사-협력사 사이의 ESG 준수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

2. 기업의 ESG 경영추진과 평가대응 애로사항 존재

- 기업들의 ESG 경영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목표설정,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대한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하고 업무/비용에 대한 부담 존재
- 기업들은 평가기관별 상이한 평가항목, 가중치 등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떠한 지표를 기준으로 ESG 대응 방향을 수립할지 혼란을 겪음
  * 국내외 ESG 평가지표는 00여 개 이상 운영되며 각 기관마다 고유한 ESG 평가 프로세스 지표 측정산식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ESG 수준을 평가

<주요 글로벌 ESG 평가기관 및 평가방식(예시)>

평가기관	평가방식
DJSI CSA (S&P Global)	1995년 설립된 평가기관으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ESG 설문 제출 평가방식을 통해 자본시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2,500개 대상으로 산업별 최고 기업 선정 발표)
MSCI ESG Rating (Morgan Stanley)	산업별 ESG 평가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시된 ESG Data를 기반으로 평가, 평가 결과 및 평가대상의 이슈를 종합해 MSCI 편입 기업 선정 및 평가지표를 차등 적용
FTSE Russell (Morgan Stanley)	기업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ESG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자체 평가결과와 기업의 설명자료를 수렴해 최종 평가 결과를 시장에 제공(지배구조, 환경 사회 분야의 14개 항목, 300개 평가지표를 통해 ESG 종합평가)

3. 국내외 ESG 이슈 인식차이에 따른 시장혼란 발생

- ESG 이슈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및 접근방식의 차이로 해외와 국내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항목 사이에 상이한 요소가 존재하므로 시장 혼란이 발생

<ESG 평가기준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인식차이 예시>

구분	평가기준
사회문화적 차이	(다양성) 직원 다양성 측면에서 다민족·다국적 국가의 글로벌 기업과 단일민족이 주를 이루는 국내기업의 차이 * 주요 해외지표는 인종, 국내 특성 지표는 여성, 장애인 등
	(공급망) 공급망 리스크 측면에서 ESG 평가 및 관리에 집중하는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기업 현실의 차이 * 국내지표는 해외지표가 요구하지 않는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강조
	(고용/노동) 인권 및 노동 관련 리스크 정도에 그치는 해외 기준과 달리 국내에서는 인권과 노동 리스크 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 * 국내지표는 해외지표가 요구하지 않는 신규채용, 복리후생을 강조
법제도적 차이	(지배구조(이사회)) 주요 평가기관별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이 다르며, 국내법의 제약에 따른 차이 존재 * 경영진 주식소유 요건 평가 항목에서 DJSI, MSCI는 CEO 및 주요 임원진의 주식소유 현황을 평가하지만,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위 금지)에 따라 회사정보를 알고 있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해당 회사의 증권매매를 금지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첫 발간한 이후 년이 경과했으며, 개발 당시에 참고했던 국내외 ESG 규범의 변화사항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정을 추진함

1. 기업 규모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 제공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침 필요
- 공시 방식 및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설명 제공

2. 세부기준 명확화 및 진단체계 개선

- 진단항목별 구체적인 기준 및 단계 설정의 필요성 강조
- 지표별 설명 및 의미 명확화를 통해 실무자의 이해도 향상 고려

3. 글로벌 기준 연계성과 중요도에 따른 지표 구분

- 법적 근거와 국제 표준(GRI, ESRS 등)과의 연계 강화
- ESG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필수와 선택 항목 구분

4. 지속적인 산업별 특화지침 개발 필요

- 업종별로 집중해야 하는 이슈와 중대성 이슈 분석 및 우선순위 제시
- 평가방법의 일관성 확보와 세부기준의 명확화로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

5. 프레임워크 정교화 및 지속적 개선

- 목표 및 전략을 경영진 의사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매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글로벌 기준과 기업의 필요를 반영

02. K-ESG 가이드라인 개발방향

1.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ESG 경영을 위한 우선 고려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 및 공시기준*의 공통·핵심사항을 분석
  * DJSI, MSCI, EcoVaid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해 가이드라인의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2.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진단항목은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과 일부 글로벌 기준에서 사용되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요소 중심의 추가 진단항목을 구분해 제시
  - 기업의 ESG 추진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3.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일반사항) ESG 경영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기관의 자체적인 ESG 경영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제시해 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평가대응 역량을 확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ESG 수준을 진단

할 수 있도록 손쉽게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평가·검증기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해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을 제시

03. K-ESG 가이드라인 개발과정

1. K-ESG 가이드라인 1.0(2021) 개발 프로세스

(1단계) 글로벌 ESG 지표 정합성 검토

- 글로벌 13개 ESG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을 조사하여, 국내기업에 필요한 ESG 진단항목 체계를 설계(영역-범주)
- ESG 진단항목 중 13개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선정함

국내외 ESG 표준지표 및 이니셔티브(13개)
- 국내: NPS 책임투자 평가지표 외 2개
- 해외: DJSI,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외 7개
  ☞ 정보공시 영역, 기후변화 대응, 다양성, 산업안전 등 각 표준지표 및 이니셔티브 요구 공통문항 도출, 산정방식 비교 분석

(산출물)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진단기준)

⇩

(2단계)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 K-ESG의 산업계 적용 및 확산을 위해 산업계, 금융계, 경제계, NGO, 학계, 평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를 고도화함
  (산출물)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 수정/보완

⇩

(3단계) 국내 ESG 관련 정책·제도 정합성 검토

- 국내 법/규제와 정합성을 검토해 K-ESG 기본 진단항목이 법/규제와 상충되는지 최종 검토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정책·제도 등의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지표 구성
  (산출물) K-ESG 가이드라인 1.0

2. K-ESG 가이드라인 2.0 개정 프로세스

(1단계) 국내외 ESG 지표 업데이트 사항 반영

- 개발에 참고했던 글로벌 13개 ESG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의 개선사항들을 확인해 수정사항에 반영
- 최근 발표된 평가 및 공시표준을 참고해 국내기업에 적합한 ESG 진단항목을 추가(수정/신규 161개)
  (산출물) K-ESG 개정내역서

⇩

(2단계)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 산업계, 금융계, 경제계, NGO, 학계, 평가기관 등 유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의견 97개)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K-ESG 개정사항을 점검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
  (산출물) 의견수렴표, K-ESG 개정내역서 수정/보완

⇩

(3단계) 국내 ESG 관련 정책·제도 정합성 검토

- 국내 법/규제와 정합성을 검토해 K-ESG 기본 진단항목이 법/규제와 상충되는지 최종 검토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정책·제도 등의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지표를 구성(신규 2개)
  (산출물) K-ESG 가이드라인 v2.0 개정본

04.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 역대 K-ESG 가이드라인

- 2021년부터 개발된 K-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유관기관, 정부 및 지원기관 등 산업계 전반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단항목이 신규 개발 및 고도화됨
- 조직 내 ESG 경영체계 구축, 외부 평가대응, 공급망 관리, ESG 정책 수립 시 활용 등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주체별 목적에 따라 폭넓게 사용 가능

K-ESG 가이드라인 v1.0	개발 목적	-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 - 조직의 ESG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개발 방향	- 국내·외 주요 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분석 -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진단지표로 개발
	진단항목 구성	- 총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진단항목
	구성 특징	- 업종 공통의 ESG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고용 추가진단항목 개발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1.0	개발 목적	- 조직의 공급망 ESG 평가 대응 및 ESG 경영체계 구축 - 조직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ESG 평가체계 구축
	개발 방향	- 업종별 이니셔티브 및 다수의 공급망 ESG 평가에 포함된 공통 진단항목을 분석 - 공급망 ESG 진단 및 실사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 개발 - 진단항목별 국내 법/규제 정합성 검토
	진단항목 구성	- 총 4개 영역, 18개 범주, 60개 진단항목
	구성 특징	- 조직 규모 및 수준별 적용을 위한 기초/심화/추가 진단항목으로 개발 - 조직 ESG 담당자를 위한 업무표준 매뉴얼 개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1.0	개발 목적	- 업종별 특화된 ESG 평가 지표 대응 - 조직의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대응 강화
	개발 방향	- 글로벌 ESG 공시표준, ESG 평가지표, 업종별 이니셔티브, 업종별 ESG 주요 이슈를 분석 - 국내 현황을 고려한 업종별 진단항목 개발
	진단항목 구성	- 총 4개 업종, 20개 범주, 35개 진단항목
	구성 특징	- 목적에 따라 기(旣)개발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구성

2. ESG 평가기관/자본시장 등 평가대응

- 외부 ESG 평가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ESG 평가기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 2.0 개정본'과 본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해 경영활동에 반영
  - 조직의 규모, 상장 여부, 평가사의 주요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중 해당되는 진단항목을 점검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을 함께 활용

3. 공급망 ESG 평가대응 및 체계구축

- (원청사) 공급망 ESG 평가체계 구축 시 활용
  - 동일 업종 내 공급망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ESG 진단실사 지표를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과 본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을 함께 활용해 구성
-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ESG 평가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고객사의 공급망 ESG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과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해 평가에 대응
  - 조직의 규모 혹은 업종 특성에 따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심화 진단항목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초 진단항목 정의서'(12개 범주 25개 진단항목와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함께 활용
  -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업무표준 매뉴얼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직의 ESG 경영 내재화를 추진

4.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 수립

- 업종별 ESG 대응 지원에 필요한 방향성 정립
  - 업종별 주요 ESG 특화 이슈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선정
  -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무역장벽화되는 이슈와 생물다양성 등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이슈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이해관계자별 K-ESG 가이드라인 활용>

활용주체	활용방안
중소·중견 기업	• 국내외 ESG 평가대응 부담 경감 : 국내외 ESG 평가기관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ESG 평가 부담을 경감 • ESG 목표수립 및 벤치마크 시 활용 : ESG 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목표 수립 : ESG 자가진단 결과와 상대적 수준비교를 통한 벤치마크 자료로 활용 • ESG 경영추진 업무가이드로 활용 : ESG 경영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운영시스템, 활동, 성과, KPI 확인 : ESG 실행체계 구축 및 성과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 투자, 인력 운영, 업무 개편 등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
평가·검증 기관	• ESG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 ESG 평가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지표 개발 및 기준지표 보완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 • ESG 평가지표의 수용성 제고 가능 : ESG 평가서비스 제공 시 평가대상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

투자·금융 기관	• 투자기관 자체 ESG 평가체계 구축 시 활용 : 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자체 ESG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항목 및 기준, 데이터 원천 등을 참고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기준 등 사용 가능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이행수준 점검 시, 위탁운용사의 ESG 평가기준 및 K-ESG 가이드라인 비교 가능

III.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01. 진단항목 구성

1. K-ESG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 개요

•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 (영역 앞서 기술한 ESG 정의를 기반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여부 측정 항목 추가하여 정보공시Public), 환경 (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대분류 설정
- (범주) 국내외 ESG 공시/평가기준에서 공통 제시 이슈 기반으로, 조직이 ESG 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

•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 제공
- (추가설명) 각 진단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 경영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진단항목에 따라서는 대체 진단 기준 및 활용 근거 설명
- (용어정리) 항목 정의서 및 추가 설명 중 별도 기술 필요 용어 정의
- (참고자료) 항목 정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해외 유사 지표 제시(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출처 제시)

•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추가 진단항목 정의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는 않으나 ESG 경영의 추가적인 필요요소를 제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
- (활용)
  ① 기본 진단항목 적용 불가 시 대체 활용
  ②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적으로 조직의 ESG 성과 점검

③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에 활용(ex. 산림탄소흡수량, 고졸직원 채용 등)

2.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 개별 진단항목 정의서 내 구성 체계
  - (분류번호 '영역범주항목'의 단 구성으로 진단항목 분류
  - (항목설명) 진단항목의 목적·내용·방법 등을 함축적으로 제시
  - (성과점검) 항목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원천', '데이터 기간', '데이터 범위', '데이터 산식'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 설명
  - (점검기준) '성과점검'에서 확인한 자료 기반으로 해당 조직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 제시3~5단계
  - (적용방안) '점검기준'으로 확인한 조직의 SG성과를 조직 간 항목 간 영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진단항목별 00점 기준으로 5단계, 혹은 3단계 배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3~5단계의 배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및 해외의 ESG평가 기관에서는 1) 서열척도, 2) 등간척도(100점), 3) 비율척도 형태로 활용하기도 함
  - (점검기준 유형)
    ① 단계형1: 정성/정량 기준에 따라 3~5단계 설정
    ② 단계형2: 산업평균 및 추세 비교 후 각각의 점수를 산술평균
    ③ 선택형: 제시된 요건 중 해당 항목 수에 따라 수준 산정
    ④ 감점형: 제시된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 수에 따라 감점
    → 추가 설명을 통해 ESG 성과 점검 가능한 다양한 방법 제시

3. 진단 항목 정의서 주요 공통개념의 정의

- 진단 항목 정의서 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은 아래와 같음
  - (원단위per unit)) 어떤 제품용역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재화자본 시간 에너지 등 혹은 배출량을 측정하는 개념. 기업 간 규모를 고려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추세) 일정 기간 동안 정량적 자료의 변동 방향성.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4개년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추세로 정의. 연평균 성장률 >0 인 경우 '증가한다', 연평균 성장률 0 인 경우 '감소한다'로 정의 단 '변동없음'은 기업내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범위 설정이 가능함
  - (연평균 성장률(CAGR)) 대상기간에 대한 연간 복리 평균 성장률 의미.

$$CAGR(t_0,t_n) = \left(\frac{V(t_n)}{V(t_0)}\right)^{\frac{1}{t_n - t_0}} - 1 \qquad V(t_n) : \text{마지막년도값},\ V(t_0) : \text{최초년도값}$$

4. 진단 항목 정의서의 특징

- 기본 진단항목의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 제시
  - 국내해외 ESG 평가지표의 경우 ESG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들의 자가진단 불가능 및 과도한 비용/노력 소요
  -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은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 기업들이 진단항목의 기준 및 방향성을 활용해 스스로 성과를 진단하고 ESG 성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한국적 특성 반영, 법/제도 정합성을 반영하여 실제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 지원
- 자가진단을 위한 기본 진단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진단항목 체계를 통해 제공
  - ESG 경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각 영역(ex.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개별 진단항목 개발 시, 단계별 기준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추가적 설명을 통해 ESG 자가진단을 위한 상세한 정보 제공
  - 각 영역의 범주별 ESG 수준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공
-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대체 활용 가능한 추가 진단항목 제시
  - 기업의 ESG 수준 및 성과는 기본 진단항목을 활용해 진단
  - 다만, 기본 진단항목으로 평가가 불가하거나, 기본 진단항목이 아닌 특화된 항목으로 진단을 원할 경우 개별 기업/기관의 니즈를 고려해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진단항목 제시
  -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도록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제시
  -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
  - 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현황과 수준을 진단할 경우 ESG 경영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진단항목 구성
  - 그 외에도 평가 및 검증기관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ESG 수준 평가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5.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정보공시 (P)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E) (25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E-2-1	원부자재 사용량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E-3-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E-3-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E-5-1	용수 사용량
		E-5-2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기후변화대응	E-10-1	기후변화 거버넌스
		E-10-2	기후변화 중장기 리스크 식별
		E-10-3	기후변화 물리 리스크 및 대응 방안
		E-10-4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 및 대응 방안
		E-10-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선언
	생물다양성	E-11-1	자연자본 식별
		E-11-2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
		E-11-3	산림보호 활동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사회 (S) (22개 문항)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2	정규직 비율
		S-2-3	자발적 이직률
		S-2-4	교육훈련비
		S-2-5	복리후생비
		S-2-6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3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S-4-2	산업재해율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S-5-2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S-6-2	협력사 ESG 지원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S-7-2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G)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의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2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4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G-5-1	내부감사부서 설치
		G-5-2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29개 범주, 69개 기본 진단항목			

6.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시 고려 사항

- 진단항목 별 가중치 결정
  -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을 활용해 자가진단할 경우 진단항목 별 가중치 부여를 통해 진단항목 간의 중요도 결정 가능
  - 가중치는 산업별 이슈, 조직의 ESG 추진방향을 종합하여 결정 가능
- K-ESG 가이드라인의 가중치 결정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목별 가중치를 별도 설정하지 않고 개별 진단항목 별 배점을 00점으로 설정
  - 향후, K-ESG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중치 설정 검토 예정
- 이해관계자별 가중치 활용 방안
  -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식은 ①모든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②산업 및 조직의 ESG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③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기반한 가중치 결정이 있음
  - 가중치를 활용하여 조직의 ESG 성과 수준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항목별 가중치 설정 후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성과점검을 할 수 있음

항목별 가중치 설정 방식 (예시)

- (모든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각 진단항목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개별 항목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예를 들어,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9개 항목으로 자가진단 할 경우, 항목별로 1/69의 가중치를 적용해 성과 점검 가능
- (산업 및 조직의 ESG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각 진단항목의 영역/범주/항목 중 조직의 ESG 추진전략에 해당하거나, 산업 기회요인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상시적 리스크에 노출된 항목 등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 이때, 가중치의 합산은 00%가 되어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에 기반한 가중치 결정) 정부기관, 투자기관, 평가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 조직의 ESG 성과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높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가중치의 합산은 00%가 되어야 함

02.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2-1. 정보공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1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 방식		
항목 설명	• 조직이 ESG 정보공시 동향에 맞추어 정보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ESG 정보공		

<table>
<tr><td>항목 설명</td><td>시 방식을 정립하고 있는지 점검
• ESG 정보를 종합한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및 ESG 정보공시 외부 확산/전파 등 정보 접근성 향상 측면의 노력을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ESG 정보공시 여부를 대외에 알리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 전자공시시스템 上 ‘자율공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ESG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분산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
4단계
ESG 정보를 통합한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거나 특정 URL에 담고 있는 경우
5단계
ESG 정보를 통합한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의 발행여부를 ‘전자공시시스템자율공시’사항으로 알리는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ESG 정보공시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직은 정기적으로 특정한 정보공시 창구(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ESG 정보를 접근/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시 여부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ESG 정보공시를 하였다고 정의한다.
- ESG 정보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 결과에 따른 핵심이슈, 또는 조직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ESG 이슈별로 '전략', '조직', '활동', '성과', '목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ESG 관련 이슈가 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이슈를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위험' 등도 중요한 ESG 정보에 해당한다.

- 정부기관, 투자기관, 서비스기관 등 ESG 정보 수요자의 정보공시 요구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주요 국가별 규제기관 및 국내외 산업표준 등에서 다양한 ESG 정보공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조직에 통용되는 정보공개 방식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주요 국가별 규제기관 및 국내외 산업표준 등에서 제시한 정보공시 방식은 크게 1) 공시규제 사항인 사업보고서,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조직의 홈페이지 및 기타 플랫폼, 4) 정부기관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ESG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 사업보고서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보고서 작성 업무 부담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ESG 정보 수요자의 가독성은 높으나, 보고서 발간 업무 부담
  - 조직의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대비 적은 부담. 공개 가능 정보의 양적 확대 한계
  - 정부기관 운영 플랫폼 : 산업 공통기준이 있을 경우 유리, 산업별 차등 시 플랫폼 유지비용 높음
- ESG 정보 접근성이란 정보 수요자가 시간, 장소,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ESG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ESG 정보공시 사실을 대외 확산/전파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ESG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1) ESG 관련한 조직의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nteractive 기술, 2)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arrier-Free 기술, 3) ESG 정보의 분석가능성, 추적가능성,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한 BRL 기술을 반영한 ESG 정보공시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2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 주기		
항목 설명	• 투자자, 고객 등 정보 수요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필요한 최신 ESG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ESG 데이터 취합/분석/마감 기간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ESG 정보공시 주기를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이 ESG 정보공시 일자,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발간 주기'를 확인하여 조직이 년 단위로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ESG 정보공시 일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주기 [데이터 기간] 최근 4개년 회계연도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table>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ESG 정보공시 주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2년 단위로 보고서 발간 및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3단계
1년 단위로 보고서 발간 및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ESG 정보 수요자가 조직의 ESG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ESG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정보가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공시 주기를 재무정보 공시주기와 동일하게 하거나, 재무정보 공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ESG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정보 수요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이를 확인한 즉시 대외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부 조직은 주요한 ESG 성과가 창출되는 시점마다 공시하기도 하며, 어떠한 조직은 ESG 정보공시에 따른 업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격년 주기로 공시하기도 한다. 반면 ESG 정보공시 규제 및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외 기관은 ESG 정보공시 주기를 1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가 재무정보와 ESG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적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GRI Standards 2-3(Reporting period, frequency and contact point)에서는 조직의 정보공시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함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는 연 1회 이상 ESG 정보공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에서는 정보공시 기간을 1년 이하로 하도록 함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시 '정보공시 주기'를 명시해야 한다. ESG 정보 수요자가 공시 시점을 추정 및 예상하기 위한 장치로, 조직은 최대한 명시한 '정보공시 주기'에 따라 공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3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 범위		

<table>
<tr><td>항목 설명</td><td>• ESG 정보공시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조직의 ESG 활동 및 성과를 충분히 대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미치는 사업장(자회사 포함)의 ESG 정보가 최대한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ESG 정보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사업장 등의 범위를 비율(%)로 계산(매출액, 직원 수, 생산량 등을 모수로 활용)
[데이터 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上 ‘자율공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사업적 영향력 및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ESG 정보공시 범위 = ESG 정보공시에 포함된 사업장 등의 (매출액 등) / 전체 조직의 (매출액 등)</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ESG 정보공시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이 법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ex.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일부 또는 모든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조직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 등의 일부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4단계
조직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 등의 일부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단, 조직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5단계
조직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 등의 모든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전 어떠한 범위까지 성과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성과관리가 가능한지 등 최대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ESG 개념을 조직의 재무적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자본시장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최

대범위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정보’ 범위와 동일시하려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직은 아래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행사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S GAAP, IFRS 회계지침에는 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조직을 상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조직으로 간주한다.)

1) ESG 정보를 공시하는 조직이 직접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2) 지분율 기준으로 경영 및 자본구조 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의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3) 지분율 外 경영방식 및 사업운영 상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의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본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 정의서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시 최대범위는 상기의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1) 조직의 직접 소유 및 관리 사업장, 2) 지분율 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자회사 등), 3) 기타 운영구조 상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연결법인 등)으로 한다.

- ESG 정보공시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산출할 수 있으며, ESG 정보공시 범위를 산출한 방식이나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 기준 : 조직이 창출한 매출액이나, 조직의 총 매출액에 기여한 부분으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보편적 방식이다. 또한, 조직이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양상을 보이며, ESG 성과와 매출액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 유용한 방식이다. (ex. 한 조직에 2개 사업장인 A, B가 존재하고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A사업장의 정보만 공시하는 경우, 그 조직의 ESG 정보공시 범위는 70%가 된다.
  - 인력 수 등 인사 데이터 기준 : 조직이 직접 고용한 인력 수, 또는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모든 인력수로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이나 생산/판매량의 연도별 편차가 크거나, 사업운영에 있어 인력수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에 적용가능한 방식이다. (ex. 한 조직의 총 100명 인력 중 사업장 A에 70명, 사업장 B에 30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업장 A의 ESG 정보만 공시할 경우, 그 조직의 정보공시 범위는 70%가 된다.)
  - 생산량 및 판매량 기준 :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량, 또는 판매한 제품의 비율로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의 시기적 편차가 크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단위 당 단가 변동이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 한 조직의 총 생산량 100톤 중 사업장 A가 70톤, 사업장 B가 30톤을 생산하고 있고, 사업장 A의 ESG 정보만 공시하는 경우, 그 조직의 정보공시 범위는 70%가 된다.)
- 조직(A)의 영향력 및 통제력이 미치는 다른 조직(B)이 별도의 ESG 정보 공시를 할 경우, 조직(A)의 ESG 정보공시 범위에서 다른 조직(B)의 ESG 정보공시 범위는 제외한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P-2-1</td><td>정보공시</td><td>정보공시 내용</td></tr>
<tr><td>항목</td><td colspan="3">ESG 핵심이슈 및 KPI</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의 사업성과 및 환경/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는 핵심 ESG 이슈에 대한 조직의 정보공시 수준을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이 사업적/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핵심이슈에 대해 ‘위험 및 기회 요인’, ‘이슈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절차’, ‘이슈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공시여부를 확인
[데이터 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上 ‘자율공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중대성 평가 결과 또는 ESG 핵심이슈를 공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중대성 평가 결과와 핵심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경우
3단계
2단계 핵심이슈에 대해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핵심이슈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제시)
4단계
3단계 핵심이슈가 사업적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적/사회적 관점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등)
5단계
4단계 핵심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조직, 전략 및 계획, 고충처리체계, 활동 및 교육 등)</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이슈의 중대성을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또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가 있으며, 중대 측면을 정의하는 데 있어 조직이 참작해야 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에 영향, 위험,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항목(ex. 지구 온난화, 에이즈, 빈곤 등) 중 합리적 평가가 가능하고, 전문가나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의 충분한 조사를 거친 주제
- 이해관계자(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시민사회 등)가 제기한 주요 지속가능성 관심사항 및 토픽
- 동종업계 및 경쟁사에 의해 보고된 산업 내 주요 토픽 및 미래 도전 과제
- 관련 법률, 규정, 국제 협약 또는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발적 협약
- 조직의 핵심가치, 정책, 전략, 운영관리시스템, 목표 및 목적
- 조직의 성공 및 재무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근로자, 주주 및 공급업체)의 기대와 관심사항
- 조직의 중요 위험 사항
-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 조직의 핵심역량 및 그 핵심역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는 그 자체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기업은 처한 상황에 따라 명시적으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 본 항목에서는 조직이 선언적으로 정량, 정성 목표를 제시하는가보다는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3-1	정보공시	정보공시 검증
항목	ESG 정보공시 검증		
항목 설명	• 조직의 ESG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가공하여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ESG 정보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정보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		
성과 점검	ESG 정보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이 충족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ESG 정보 검증의견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의견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table>
<tr><td>점검 기준</td><td>요건1
검증의견서에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이 License Number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검증기관과 검증받는 조직간 이해관계 상충이 없음을 선언한 경우)
요건3
검증의견서에 검증표준(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AA1000AS, ISAE3000, 또는 제3자 검증기관이 개발한 자체 검증표준 등)
요건4
검증의견서에 ESG 정보 검증수준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Type1/Type2, Moderate/High, 제한적/합리적 등)
요건5
검증의견서에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정보공시 지표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즉, 조직의 모든 ESG 정보 중 어떠한 정보를 검증하였는지 명시하는 경우)</td></tr>
<tr><td></td><td>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ESG 정보공시 지표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ESG 정보가 갖추어야 할 신뢰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ESG 정보 검증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의 의지이자 자율적 활동으로 조직이 공시하는 ESG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 ESG 정보 검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ESG 검증표준에는 1)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 제정기관인 ccountAbility가 개발한 AA1000AS(2018), 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인 AASB가 개발한 SAE3000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ESG 정보 검/인증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증표준이 있다. ESG 정보를 검증하는 제3자 기관이 사용해야 할 검증표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제3자 검증기관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검증을 받는 조직도 글로벌 검증표준 등에 부합하여 ESG 정보가 검증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AccountAbility는 우수한 검증 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제자 기관에게 License Number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License Number를 보유한 기관은 AA1000AS 검증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표준

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함

- ESG 정보 검증수준을 나타내는 Type1/Type2, Moderate/High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Type1 검증 : 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데이터가 신뢰할만하다는 가정 하에, 해당 데이터가 대외공시정보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증(데이터 자체 신뢰성은 미검증)
  2) Type2 검증 : 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직이 산출한 데이터값과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검증(데이터 자체 신뢰성과, 대외공시 정보 반영 여부를 검증)
  3) 중위수준(Moderate Assurance) : 조직 내에서 취합 및 관리되는 데이터 기반의 검증. 데이터의 범위 및 샘플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으로,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초점을 둠
  4) 고위수준(High Assurance) : 조직 내에서 취합 및 관리되는 데이터와 함께, 조직 외부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진행되는 검증. 데이터의 범위 및 샘플링이 방대하여 정보공시 신뢰성이 높음

2-2. 환경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1	환경	환경경영 목표
항목	환경경영 목표 수립		
항목 설명	• 조직이 책임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수립한 환경 분야 단기/중장기 목표 구체성과 내재화 수준을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단기/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환경 분야 목표 수립 현황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 또는 조직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나타내는 환경경영 미션비전지향점이 없는 경우 **2단계** 환경경영 미션비전지향점만 제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2단계 조직의 환경 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단기 목표만 설정하고 있는 경우 **4단계** 3단계 중장기 목표까지 수립하고 있는 경우 **5단계** 4단계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이행점검 지표를 마련한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통해 조직의 사업운영 및 외부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조직은 사업운영에 해당하는 모든 직/간접 환경규제를 관리해야 함과 동시에 사업성과와 연계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조직이 수립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에는 아래와 같은 이슈가 해당된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관련 투자활동
폐기물 발생량 저감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재사용 용수 확대	원자재 효율적 투입
산림 및 토양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련 투자활동	친환경 공급망	구축 대기/수질/토양 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제품 환경 라벨링		

- 목표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업무활동의 직접적인 선행조건이다. 조직은 내부 성과관리와 대외신뢰성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 목표는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2)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여건 상 현실적이고 달성가능해야 한다. 3) 목표 대비 이행현황이 측정가능한 계량적 형태이어야 한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5) 목표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역량, 경영환경, 사업전략, 또는 최고경영진 등의 의지에 따라 환경 분야 목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직이 수립한 목표 수준의 타당성, 신뢰성,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가 1) 글로벌 합의에 준하는 수준인지(ex. 2050 탄소중립), 2) 국내외 법/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인지(ex. 수질오염물질 법적허용기준 준수), 3) 동종산업 평균에 맞춘 수준인지, 4) 산업 내 최고 기업을 지향하는 수준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단기, 중기. 및 장기를 구분하는 기간은 연간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한국회계준원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는 단기는 '1년 이내', 중기는 '1년 초과 년 이내', 장기는 '5년 초과'로 통칭한다. 단, 조직이 직면한 대외환경, 산업경쟁, 기술개발 수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방식, 업무관행,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기간은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산업에 속한 조직은 단기를 개월, 중장기를 년 이상 볼 수 있으며, 사업모델 변동이 크지 않거나, 안정적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조직은 단기를 년 이내, 중장기를 0년 이내로 볼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환경 분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2	환경	환경경영 목표
항목	환경경영 추진체계		
항목 설명	• 조직이 환경성과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 영역 요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가이던스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요건1**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전담조직, 실무협의회, 경영회의 및 내부점검체계 등) **요건2**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전사 환경경영 기획, 점검, 성과관리 등 실행업무 담당) **요건3** 환경경영 과제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환경투자 예산, 역량강화 교육, 내외부 전문인력 등) **요건4** 환경경영 추진 현황을 점검/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IT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과제점검 회의, 제3자 의견수렴 등) **요건5** 환경경영 과제 이행현황이 경영진 포함 관련 구성원의 성과평가지표(KPIs)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선택 항목의 합산값으로 평가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추가 설명

- 환경경영이란 조직의 사업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이다. 조직의 환경경영 체계란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방침 개발, 이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조직, 책임, 자원, 절차, 과정 및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 조직은 환경경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 1)조직은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거버넌스 및 업무분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활동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 4) 목표 대비 이행현황을 점검 및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5) 목표 이행현황은 경영진 및 구성원 성과지표(KPIs)에 반영해야 한다.
-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경 리스크의 정확한 식별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환경경영 추진체계 점검·평가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제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조직이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체계 보유 여부를 국제 규격(ISO14001 등) 인증심사기관이 심사, 인증하는 방식
  - 제3자 전문기관의 환경경영시스템 검증 :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3자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방식
  - 내부 전문가에 의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국내외 규격의 요구사항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직 내부에서 선발된 심사요원이 심사하는 방식
- 조직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개별 사업장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 관련 경영시스템(ex.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 도입 및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단위(ex. 매출액, 구성원 수, 생산량 등)를 기준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 및 인증받은 사업장 비율을 통해 조직의 경영활동 전반에 환경경영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2-1</td><td>환경</td><td>원부자재</td></tr>
<tr><td>항목</td><td colspan="3">원부자재 사용량</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개념을 기반으로 원부자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포괄한 사용량을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자원에너지원부자재 사용량, 조직의 원부자재 구매 및 사용량 실적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총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 총 원부자재 사용량(재생불가능한, 재생가능한, 재생/재활용) / 원단위 활용 분모 (매출액 등)</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감소 추세
*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본 ‘원부자재 사용량’ 항목 정의서를 참고할 수 있는 산업군을 좁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서비스 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광물, 종이,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는 도매/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원부자재는 기본적으로 재생가능 여부에 따라 재생가능한 원부자재, 재생불가능한 원부자재로 분류되며, 해당 원부자재의 원천(Source)에 따라 재생/재활용 원부자재, 천연 원부자

재로 분류된다. 아래 분류별 예시를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원료 특성 및 가공 방법에 따라 보편적·합리적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재생불가능한 원부자재 : 자원 채취 후 재생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야 재생 또는 보충될 수 있는 고갈 가능한 천연 자원. 예) 금속 및 기타 광물, 석유 및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 등
- 재생가능한 원부자재 : 자원 채취 후 자연적인 성장 또는 보충 과정에 의해 이전의 자원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 자원. 예) 산림, 담수, 토지, 야생 동물, 농업 자원의 목재 등
- 재생/재활용 원부자재 : 재생 가능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재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범주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원자재(광석, 광물, 목재와 같이 제품의 생산에 있어 기초물질로 사용되는 천연자원)
  - 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재료(기계용 윤활유와 같이 제조 공정에 필요하지만 최종 제품이 아닌 재료)
  - 기초물질인 고아석, 광물, 목재 등 이외 모든 형태의 재료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반제품 또는 부품
  - 종이, 판지 및 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용 재료
• 조직은 1) 조직의 과거년도 사용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원부자재 절감 목표 대비,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원부자재 사용량은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부자재 사용 효율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내부 분석근거 또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결과 등을 통해 원부자재 사용 효율성이 최고 수준임이 입증된 경우 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2-2</td><td>환경</td><td>원부자재</td></tr>
<tr><td>항목 재생</td><td colspan="3">원부자재 비율</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천연자원 고갈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투입 방식을 자원순환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중 재생 원부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재생 원부자재로 대체하는 등의 자원순환 이행성과를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직의 원부자재 구매 및 사용량 실적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 = 총 재생 원부자재 사용량 / 총 원부자재 사용량</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
* 재생 원부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 원부자재를 100% 사용하는 경우 1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원료,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 경제 대안으로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경제 모델(3R:Reduce, Recycle, Reuse)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순환 경제는 폐기 이후의 재활용, 자원의 절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순환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 본 ‘재생 원부자재 비율’ 항목 정의서를 참고할 수 있는 산업군을 좁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서비스 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광물, 종이,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는 도매/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재생 원부자재'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재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재생 원부자재 사용을 통해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자원순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부 관점에서는 재생 원부자재 사용이 사업장의 원부자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재생 원부자재 사용량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RI Standards - 301-2(Recycled input materials used)
  - 공시 요구사항: 조직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사용한 재생 원부자재의 비율 보고
  - 측정 산식: 사용한 재생 원부자재 비율 = $\frac{\text{사용한 총 투입 원부자재}}{\text{사용한 총재생투입 원부자재}} \times 100$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재생 원부자재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1	환경	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항목 설명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이 감축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 上 명세서배출량통계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 총 온실가스 배출량 / 원단위 활용 분모		

<table>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이 ‘탄소중립’ 또는 ‘탄소제로’를 달성한 경우 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Scope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Σ[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폐기물처리]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Σ[구매전기, 구매 열(온수, 스팀 등)]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값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SBTi* 등) 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이나, 국가별 감축 규제 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구의 기온이 1.5°C, 2.0°C 이하로 관리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이니셔티브로써,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제공 중 (https://sciencebasedtargets.org/sectors)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 上 명세서배출량통계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3-2</td><td>환경</td><td>온실가스</td></tr>
<tr><td>항목</td><td colspan="3">온실가스 배출량 (Scope3)</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Scope1 & Scope2 배출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의 감축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Scope3는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직이 Scope3를 직접 감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Scope3의 인식/산정/검증 등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 수준을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이 지난 1개년 간 Scope3 온실가스 배출 범주를 인식,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Scope3 측정 범주, Scope3 배출 데이터, Scope3 검증의견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td></tr>
<tr><td>점검 기준</td><td colspan="3">
<table>
<tr><td></td><td>Scope3 범주 인식(1/3)</td><td>Scope3 배출량 산정(1/3)</td><td>Scope3 배출량 검증(1/3)</td></tr>
<tr><td>1단계</td><td>조직의 Scope3 범주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td><td>조직의 Scope3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td><td>Scope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td></tr>
<tr><td>2단계</td><td>조직의 가치사슬 관련 일부 Scope3 범주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td><td>국내 등 일부 사업장의 Scope3 배출량만 측정하고 있는 경우</td><td>일부 Scope3 범주 및 측정값에 대해서만 제3자 검증을 하는 경우</td></tr>
<tr><td>3단계</td><td>조직의 가치사슬 관련 모든 Scope3 범주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td><td>조직의 모든 사업장의 Scope3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td><td>모든 Scope3 범주 및 측정값에 대해 제3자 검증을 하는 경우</td></tr>
</table>
</td></tr>
<tr><td>점검 기준</td><td colspan="3">적용방안(단계형)
※ ‘Scope3 범주 인식’, ‘배출량 측정’, ‘배출량 검증’ 각각의 점검 기준 적용 결과를 /3씩 하여 최종 점검 결과 산정 (범주 인식 점수 + 배출량 산정 점수 + 배출량 검증 점수) * 1/3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
</td></tr>
</table>

추가 설명

• Scope3 온실가스란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장(경계) 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다.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직접 배출되는 cope1과 외부 전력 및 열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cope2에 비해 감축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이슈가 가속화

됨에 따라 cope3 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달-개발-생산-유통-판매-유지-폐기] 등 경영활동 전반을 내재화한 조직과 달리, 사업 운영의 대부분을 외주화(Outsourcing)한 조직은 cope1 & Scope2 못지않게, Scope3 관리가 중요하다. GreenHouse Gas Protocol이 제시한 'Corporate Value Chain(Scope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에서 제시하는 cope3 온실가스 범주는 아래의 15개이다.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업스트림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다운스트림
1.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2. 자본재 투자 및 구매 3. 1, 2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4. 원부자재 운송 5. 사업장 발생 폐기물 6. 구성원 출장 7. 구성원 통근 8. 임대 자산	9. 운송과 유통 10. 판매제품 가공 11. 판매제품 사용 12. 판매제품 폐기처리 13. 임대 자산 14. 가맹점 영업권 15. 투자

-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법/규제에 따라 의무화되거나, 산업 내 cope3 배출량 관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는 등 cope3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조직은 이와 비교를 통해 cope3 배출량 및 감축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반면, 조직이 자율적으로 cope3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거년도 배출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Carbon Trust와 같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외부 인증을 받은 경우, Scope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3	환경	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항목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타 온실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		
성과 점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table>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요건1
검증의견서에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이 License Number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 검증표준(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GHG Protocol, ISO14064-1 등)
요건3
검증의견서에 ESG 정보 검증수준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전체/일부 데이터 검증, 제한적/합리적 보증 등)
요건4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범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즉, 조직의 사업장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사업장 및 지역 등)
요건5
조직의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제3자 검증기관 의견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선, 향후 검증값의 변동가능성 등)

</td></tr>
<tr><td>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
<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

</td></tr>
</table>

추가 설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0%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 2023년 12월 14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331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6개, 산업통상자원부 72개, 농림축산식품부 5개, 해양수산부 5개, 환경부 23개이며, 관리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은 최근 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현재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 (TJ)	500	100	350	90	200	80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산업 또는 경쟁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4-1</td><td>환경</td><td>에너지</td></tr>
<tr><td>항목</td><td colspan="3">에너지 사용량</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단위 당 개념의 '원단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上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 총 에너지 사용량 / 원단위 활용 분모</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
*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에너지 사용량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화석연료'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연료'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생산한 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 열 등'
- (고체, 기체, 액체 연료)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연료 사용량 × 총발열량

- (전기)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전력사용량 × 발열량(소비)
- 조직의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비교,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 대비 비교,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비교, 4) RE100 등 글로벌 합의에 따른 목표 대비 비교,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에너지 사용량은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내부 분석근거 또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결과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이 입증된 경우 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에너지 사용량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上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2	환경	에너지
항목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이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항목을 점검 •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上 2025년까지 대규모 발전소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RPS)은 25%로써 수요 대비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표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범위는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사용', '재생에너지 크레딧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참여', '제자 전력구매계약' 등을 포괄함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 / 총 에너지 사용량 * 신에너지 사용량 포함		

<table>
<tr><td>점검 기준</td><td>1단계
지난 4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증가 추세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경우 1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td><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 조직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에너지 체계에 따라, 또는 태양광, 대기, 조류 등의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국가별 재생에너지 이용·보급·확산을 위해 조직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생산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조직의 의지와 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조직은 재생에너지 00%(Renewable Energy 100)를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0%, 30%, 50%, 70%, 100%인지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재생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지속가능경영보고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5-1</td><td>환경</td><td>용수</td></tr>
<tr><td>항목</td><td colspan="3">용수 사용량</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용수를 공급받는 취수원을 보호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자원 고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조직이 사용하는 용수 총량(신규 취수량, 내부 재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용수 사용량을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절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용수 사용량 = 총 용수 사용량 / 원단위 활용 분모</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감소 추세
*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UN의 환경경제 통합계정(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SEEA, 1993)에 따른 ‘용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용수 사용량 = 환경에서 유입한 취수량 + 조직 내 재사용량 + 다른 조직에서 전달받은 폐수량
    * 취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업용수 外 표층수 지하수 토양수 강우포집 해양취수
- 용수 사용량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의 용수 사용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조직이 취수받는 수원별 공급능력 대비, 2)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 수자원 부존량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사용량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용수 절감 목표 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의 용수 사용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용수 사용량은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용수 사용 효율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내부 분석근거 또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결과 등을 통해 용수 사용 효율성이 최고 수준임이 입증된 경우 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간 용수 사용량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 지역별, 유역별 용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2	환경	용수
항목	재사용 용수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이 도시화와 산업화 진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용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수汚水), 하수, 폐수를 효과적으로 순환·재사용하는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재사용 용수 비율 = 총 재사용 용수량 / 총 용수 사용량		
점검 기준	**1단계** 지난 4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증가 추세		

<table>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용수를 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이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1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물의 순환 개념은 '우수→하천→취수→[1회사용]→배출→하천→해양'으로써, 용수 재사용이란 인공적인 순환을 개념을 추가한 '우수→하천→취수→[사용→처리→재사용]→배출→하천→해양'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표에서 정의하는 재사용은 재생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후 이를 다시 취수하는 간접 재사용(Indirect Reus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처리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조직의 사업 및 영업 행위에 다시 사용하는 직접 재사용(Direct Reuse)을 의미한다.
- 조직의 사업 특성에 따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수준의 오수, 하수, 폐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수, 하수, 폐수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사용 용수 비율은 수자원 보호에 관한 조직의 의지와 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조직은 용수 재사용 00%를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즉, 재사용 용수 비율이 0%, 30%, 50%, 70%, 100%인지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재사용 용수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재사용 용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지속가능경영보고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6-1</td><td>환경</td><td>폐기물</td></tr>
<tr><td>항목</td><td>폐기물 배출량</td><td></td><td></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사업 및 영업 활동(ex. 연구개발, 제품 생산/가공/포장 등 포함, 소비자가 사용 이후 폐기한 폐제품은 제외)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 = 총 폐기물 배출량 / 원단위 활용 분모</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
*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 조직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은 ‘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폐기물 배출량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의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업종별 총 폐기물 배출

량 대비, 2)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총 폐기물 배출량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폐기물 저감 목표 대비, 5)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의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폐기물 배출량은 조직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폐기물 저감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내부 분석근거 또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결과 등을 통해 폐기물 관리 효율성이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경우 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2	환경	폐기물
항목	폐기물 재활용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이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는 것을 넘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가공-생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거나, 조직 내/외부에서 2차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현황,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포장재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폐기물 재활용량(재사용 포함) / 재활용(재사용 포함) 대상 폐기물 발생량		
점검 기준	**1단계** 지난 4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증가 추세 *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이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 전부를 재활용 및 재사용하고 있는 경우 1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폐기물 재사용이란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의 본래 용도 및 사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기물 재활용이란 폐기된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물 재활용은 크게 아래와 같은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물질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가금속, 철스크랩, 종이류, 목재 등 특정 2차 물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 화학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방식
  - 에너지 전환 : 폐기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고형연료, 메탄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회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 및 별표 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항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조직은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산업별, 조직 규모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Proxy)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은 1) 국내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재활용 비율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폐기물 재할용 목표 대비, 4)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를 통해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간 폐기물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

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 폐기물 유형별 재활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현황,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포장재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7-1</td><td>환경</td><td>오염물질</td></tr>
<tr><td>항목</td><td colspan="3">대기오염물질 배출량</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上 64개 대기오염물질 중 대다수를 구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기간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2.5)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上 실시간 자료조회
[데이터 기간] 최근 4개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배출농도(PPM, mg/m^3)</td></tr>
<tr><td>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
*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0'인 경우 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td><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해당 항목에서 정의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성과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조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에는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농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대비, 4)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의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또한, 조직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률(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8) 또는 법률 外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 지역별, 주요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 자료조회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7-2	환경	오염물질
항목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항목 설명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최종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table>
<tr><td></td><td>• 「물환경보전법」 上 수질오염물질을 대표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의 배출농도를 기간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최종 배출한 폐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의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수질오염물질 배출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PPM, mg/l)</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지난 4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
*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가 ‘0’인 경우 00점 적용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해당 지표에서 정의한 수질오염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上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이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한다.
- 「물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 성과를 점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에는 1) 폐수를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수계의 평균 오염농도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농도를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질오염물질 저감 목표 대비, 4) 조직의 경쟁조직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또한, 조직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률(국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또는 법률 外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수질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 조직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으나, '수질오염총량제도' 대비(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폐수 중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 성과 점검도 가능하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8-1	환경	환경 법/규제 위반
항목	환경 법/규제 위반		
항목 설명	•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 환경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평판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법/규제 위반'을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Σ(환경 법/규제 위반 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 기준	**유형 1** 지난 4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 2**		

<table>
<tr><td></td><td>지난 4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 3
지난 4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감점 사항이 없을 경우, 감점 없음
* 단, 처벌 및 조치내역의 발생횟수에 따른 감점 시 환경 분야의 총 평가 최저점은 0점으로 하한선 설정</td></tr>
<tr><td></td><td>**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table><tr><td>유형 1</td><td>유형 2</td><td>유형 3</td></tr><tr><td>-50점</td><td>-30점</td><td>-1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란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누범의 가중,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또는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제4조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 : 과실범
  - 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7조 :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 제8조 : 누범의 가중
  - 제9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 제10조 : 양벌규정
  - 제11조 : 추정
  - 제12조 : 과징금
  - 제13조 : 행정처분 등
  - 제14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외 별도의 환경 법/규제 위반사항 및 처벌수위는 개별 환경 분야 법/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 이상인 경우)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환경 법/규제 건수 外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환경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평판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산업, 경쟁조직의 환경 법/규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9-1	환경	환경 라벨링
항목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항목 설명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인체·생태계 독성 등 환경영향을 파악하며 제품의 긍정적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고 있는지 확인 • ISO 등 국제인증표준에 준하거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판매한 전체 제품 및 서비스 중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 조직의 총 매출액)		
점검 기준	**1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증가 추세 **2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감소 추세 * 완성품이 아닌 원부자재 생산 업종의 경우 원부자재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기준으로 점검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100점	50점	0점

추가 설명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은 1)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친환경성을 확인, 2)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계량적 정보를 라벨링하는 것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자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거나 국내외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표준 및 관련 제도는 국가별, 지역별 또는 제품/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어, 조직은 해당 산업 내 통용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표준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
  - 해외 주요 인증 ISO14021, ISO14024, ISO14025, CE Marking
  - 국내 주요 인증 :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GR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인증표준 및 제도가 다양함과 동시에, 조직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대외 선언하는 방식이 시장에 통용됨에 따라 산업별, 조직규모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Proxy)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이 1) 조직의 과거년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 비율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2)조직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방향에 관해 자체 수립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를 통해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조직 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용수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다.
  - 원단위 활용 분모는 매출액, 사업장 수, 생산량 등 경영활동의 다양한 지표 중 조직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조직은 '원단위' 개념에서 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등 조직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10-1</td><td>환경</td><td>기후변화대응</td></tr>
<tr><td>항목</td><td colspan="3">기후변화 거버넌스</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 내 기후변화 이슈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 구축 여부 점검
• 조직 내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핵심성과지표(KPIs)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관리·감독 기구 구축 여부 및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여부 점검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성보고서 TCFD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이사회 또는 ESG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조직도 및 회의록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혹은 기구가 없음
2단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자혹은 담당부서가 있으며 담당부서의 PIs에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3단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직C-level) 혹은 위원회가 있으며 관리직의 PIs에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예 : 기후/지속가능성/ESG 최고 책임자, 리스크 관리 최고 책임자(CEO 제외) 등)
4단계
3단계 기후 관련 문제를 이사회 차원의 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음
(예 : 기후/지속가능성/ESG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
5단계
4단계 조직 구성원에게 기후변화 대응 목표 PIs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조직이 자사가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적 영

향과 비용, 미래의 기회 등을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조직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혹은 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련 활동 및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활동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산림보호, 폐기물 관리, 관련 교육 등이 있으며, 위 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 조직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구성원에게 관련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핵심성과지표(KPIs)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10-2</td><td>환경</td><td>기후변화대응</td></tr>
<tr><td>항목</td><td colspan="3">기후변화 중장기 리스크 식별</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에 시나리오 분석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리스크 분석 및 경영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환 시나리오’와 ‘물리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이 경영전략에 아래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중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 보고서 CDP 보고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
<table>
<tr><td></td><td>구분1(1/2)</td><td>구분2(1/2)</td></tr>
<tr><td></td><td>전환 시나리오</td><td>물리 시나리오</td></tr>
<tr><td>요건1 (50점)</td><td>전환 시나리오 1개만 적용한 경우</td><td>물리 시나리오 1개만 적용한 경우</td></tr>
<tr><td>요건2 (100점)</td><td>2개 이상의 전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td><td>2개 이상의 물리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td></tr>
</table>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분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점 처리</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구분 , 2 각각의 점검 기준 적용 결과를 /2씩 반영해 최종 점검 결과 산정 (구분 + 구분) * 1/2
예) 전환 시나리오 1개만 적용한 경우 25점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각 시나리오별 상황이 조직의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조직은 기후변화가 비즈니스, 전략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CDP(Conference of the Parties) 권고에 따라 1.5℃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 조직은 1.5℃ 이하 시나리오, 1.5℃ 초과 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하여 분석한 후 각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기후 시나리오를 기후변화 자체에 의한 물리적 손해인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로 구분하고 있다.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CFD)'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Climate Scenario Analysis) 권고에 따라,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을 테스트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의 권고안은 ℃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해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의 회복탄력성을 제시한다.
- 조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구체적 모델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공신력을 가진 글로벌 기구의 추정 시나리오를 인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1.5℃ 이하	1.5℃ 초과
물리 리스크 분석에 활용되는 시나리오	RCP 1.9 혹은 SSPI 1.9	RCP 3.4 (혹은 SSPI 3.4)
		RCP 4.5 (혹은 SSPI 4.5)
		RCP 6.0 (혹은 SSPI 6.0)
		RCP 7.0 (혹은 SSPI 7.0)
		RCP 8.5 (혹은 SSPI 8.5)
전환 리스크 분석에 활용되는 시나리오	IEA NZE 2050 IEA SDS Greenpeace DDP(1.5℃ 이하 시나리오 IRENA BNEF NEO(1.5℃ 이하 시나리오 NGFS(1.5℃ 이하 시나리오	IEA B2DS IEA 2DS IEA 450 IEA APS / NDCs IEA STEPS IEA CPS DDP(1.5℃ 초과 시나리오) BNEF NEO(1.5℃ 초과 시나리오) NGFS(1.5℃ 초과 시나리오)

-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에서 등장한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기반으로 하는 C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나리오	의의
RCP 2.6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실현 불가
RCP 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6.0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	현재 추세(별도 저감 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온실가스 등으로 에너지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정도(복사강제력)를 의미

• IEA는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시나리오	의의
IEA NZE 2050	선진국이 2050년 이전 넷제로Net zero)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할 수 있는 50%의 확률과 일치하는 배출 궤적 제시
IEA B2DS	2℃를 초과하는 시나리오로 국제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신속한 탈탄소 경로를 제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100년까지 온도상승을 1.75℃로 제한하는 시나리오
IEA 2DS	평균 글로벌 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할 수 있는 최소 0%의 확률과 일치하는 에너지 시스템 개발 경로 및 배출 경로 제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IEA 450	2℃의 예상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약 50ppm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함. 핵에너지 및 CCS 등 현재 상용화된 기술을 강력하게 도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60% 감축하는 시나리오
IEA SDS	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각국의 넷제로 서약을 모두 달성한 경우를 가정해 1.65℃로 상승폭을 제한할 확률을 0%로 가정
IEA APS / NDCs	각국이 제출한 국가 자발적 감축(NDCs) 및 장기적인 넷제로 목표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가 모든 기후서약을 준수하는 경우
IEA STEPS	각국 정부가 발표한 모든 목표의 일부만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매년 1%씩 증가하는 시나리오
IEA CPS	세계가 추가적인 정책 없이 현재의 경로를 따라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로, 2040년까지 매년 에너지 수요가 1.3%씩 증가한다고 가정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0-3	환경	기후변화대응
항목	기후변화 물리 리스크 및 대응 방안		
항목 설명	• 조직이 기후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 전략, 수익 또는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지 확인 • 물리적 기후변화(물 부족, 홍수 등)로 인한 정량적인 재무 리스크를 추정하고 소요 비용,		

<table>
<tr><td></td><td>대응 전략, 관련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상황 및 수준에 따라 본 지표의 선택적 적용을 권고</td></tr>
<tr><td>성과 점검</td><td>조직이 물리적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손실과 사업기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 보고서 CDP 보고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조직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 리스크를 분석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이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 전체 차원의 물리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경우
3단계
2단계 물리 리스크로 인한 사업 영향력을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4단계
3단계 물리 리스크로 인한 사업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리스크 해소한 경우
5단계
4단계 물리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수립한 경우
* 4단계에서 리스크에 따른 사업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경우, 재해보험의 위험 전가율(%) 등도 고려할 수 있음</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해당 지표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중 특히 물리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조치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인 리스크의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또는 시설 구축 등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까지 포함한다.
- 해당 지표에서 의미하는 물리적 기후변화 리스크는 태풍, 홍수, 물 부족 등 극한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의 손해와 같은 재무적 손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비용, 풍수해 보험 비용 등의 추정치를 포함한다.
- 물리 리스크는 태풍, 집중호우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단기적 리스크(급성)와 해수면 상승, 평균기온 상승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만성)로 구분할 수 있다.
- 물리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 재해의 발생 빈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물리적 재난 관리체계, 복구 능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생산시설 등

물리적 자산의 지리적 위치에 해당하는 이상 기후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해야 한다.

- IPCC 등에서 제공하는 지역 기후 전망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공급망을 포함한 업스트림 단계와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다운스트림을 모두 포함한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리스크 해소 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연간 또는 자본 비용이 될 수 있으며 비용이 기존 예산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비용 규모의 추정치로 대체할 수 있다.
- 물리 리스크로 인한 사업 기회로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친환경 자동차 신제품 라인의 연구 및 개발, 자동차 연비개선 및 고효율 엔진 개발 등이 있다.
-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의 핵심원칙인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에 대한 준수 여부 평가 시 조직의 물리 리스크 평가를 활용되고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0-4	환경	기후변화대응
항목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 및 대응 방안		
항목 설명	• 조직이 기후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 전략, 수익 또는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지 확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에 따른 리스크(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등)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정량적인 재무 리스크를 추정하고 소요 비용, 대응 전략, 관련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상황 및 수준에 따라 본 지표의 선택적 적용을 권고		
성과 점검	조직이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로 전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 보고서 CDP 보고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조직이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이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 전체 차원의 전환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경우 **3단계** 2단계 전환 리스크로 인한 사업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4단계** 3단계 전환 리스크로 인한 사업 영향력을 사업장별로 측정해 리스크 해소에 드는 예상 비용 예상 평균 소요기간 등을 분석하는 경우 **5단계** 4단계 전환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수립한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해당 지표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중 특히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등을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환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조치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전환 리스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법률, 기술 및 시장 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존재하며 이는 변화의 특성, 속도에 따라 조직의 재무 및 조직에 대한 소비자 평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파리협정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NDC) 이행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 연비규제, 에너지 관련 법안 등 정책적 리스크가 이에 포함된다.
- TCFD는 조직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 리스크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위험 요인	발생 가능한 사례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정책 및 법률 리스크	• 탄소배출 가격 인상 • 배출공시 의무 강화 • 배출관리,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강화 • 화석연료 기업 대상 소송 증가	• 배출 비용 증가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 기존 화석연료 의존 자산의 조기 상각 및 좌초자산화 •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증가 및 평판 하락 • 배출 규제 준수를 위한 설비 투자 등 자본 지출 증가
기술혁신 리스크	• 저탄소 기술 전환 실패 • 저탄소 제품의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대체 • 신기술 투자 실패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 지출 • 기존 화석연료 관련 자산의 조기 상각
시장 및 평판 리스크	• 소비자 및 투자자 선호 변화 •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증가 • 고탄소 업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 고탄소 제품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 하락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 고탄소 업체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 인력 관리 어려움 증가 • 평판 악화에 따른 브랜드 등 무형자산 가치 하락 • 자산가치 재평가에 따른 손실

- 전환 리스크로 인한 새로운 사업 기회로 글로벌 친환경차 보급 정책, 연비 및 전비 효율화 요구에 따른 제품 효율화 및 신기술 개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조직의 재무적 이익을 추산해야 한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E-10-5</td><td>환경</td><td>기후변화대응</td></tr>
<tr><td>항목</td><td colspan="3">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선언</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국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수준 대비 40% 감축)를 고려하여,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언을 했는지 확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간목표 및 이행 현황을 점검
• 온실가스 감축 범위가 Scope 1, 2 및 Scope 3까지 포함하는지 확인
• 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SBTi 등 외부로부터 검증받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 보고서 CDP 보고서 Net-zero 선언문, 기타 기후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선언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구분1 + 구분2) * 1/2</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
<table>
<tr><td></td><td>구분1(1/2)</td><td>구분2(1/2)</td></tr>
<tr><td>요건1</td><td>조직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선언(Commitment)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경우</td><td>조직이 사업장 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td></tr>
<tr><td>요건2</td><td>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감축 범위를 설정한 경우</td><td>조직이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td></tr>
<tr><td>요건3</td><td>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중간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경우</td><td>Scope1, 2 영역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td></tr>
<tr><td>요건4</td><td>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경우</td><td>Scope3 영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td></tr>
<tr><td>요건5</td><td>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SBTi 등 과학적 기반으로 검증받고 있는 경우</td><td>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증된 탄소배출 상쇄(Carbon offset) 계획을 수립한 경우</td></tr>
</table>
※ 온실가스 배출 감축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점 처리</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 구분, 구분 각각의 점검 기준 적용 결과를 /2 씩 하여 최종 점검 결과 산정 (요건 점수 요건 점수 * 1/2</td></tr>
</table>

	1개 이하 충족	2개 이하 충족	3개 이하 충족	4개 이하 충족	5개 이하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본 항목은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를 공약하는지 여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파리 협약에 따라 조직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맞게 비즈니스 활동 조정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은 사업장 내, 혹은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Scope1,2 및 scope3를 관리 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량 '0' 또는 1.5°C 조정 경로에서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것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연도는 파리협약에 따른 2050년 혹은 그 이전으로 설정해야 하며, 중간목표 연도를 설정하여 이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중장기 및 단기 목표연도에 기준연도 대비 배출량 감축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달성 목표연도까지 줄일 수 없는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이후 방출될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탄소포집, 산림/조림 등 직접적인 외부 감축 상쇄 활동을 상쇄(Carbon offset)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U는 '녹색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등을 통해 그린워싱 금지 법안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은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이후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탄소 상쇄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 EU는 탄소 상쇄계획에 활용되는 탄소배출권은 확립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증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SBTi는 각 분야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그룹을 운영하여 이니셔티브 가입을 원하는 조직에 최신 기후과학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et zero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목표치 검증을 통해 조직의 et zero 달성 목표에 공신력을 부여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1-1	환경	생물다양성
항목	자연자본 식별		
항목 설명	• 조직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자연자본을 분석 및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 • 자연자본을 식별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특정 생물종 및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 수준에 따라 본 지표의 선택적 적용을 권고		
성과	조직이 사업장 및 벨류체인에 대한 동·식물 자연환경자산 등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		

<table>
<tr><td>점검</td><td>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NFD 보고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조직이 위치한 사업장의 자연자본을 식별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조직이 위치한 사업장의 자연자본을 식별할 계획을 수립한 경우
3단계
조직이 위치한 일부 사업장의 자연자본을 식별하고 있는 경우
4단계
조직이 위치한 전체 사업장의 자연자본을 식별하고 있는 경우
5단계
대외적으로 식별된 자연자본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자연자본은 인류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물, 동물, 대기, 물, 토양, 광물 등의 모든 유형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연환경 요소로 구성된 자본 또는 자산(Stock)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와 기업이 기능하기 위해 자연자본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 자연자본의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그리고 생태계 수준에서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자연기금(WWF)은 2022년 지구생명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에서 전세계 포유류, 조류, 어류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지표인 지구생명지수(LPI)를 통해 지난 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9%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는 농업, 운송, 광업 및 제조업 등 인간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비롯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자본 감소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 육지 및 해양사용 변화, 2) 과도한 자원 채취, 3)기후변화, 4) 오염, 5) 침입종 도입
- 세계은행(World Bank)는 021년 자연에 대한 경제적 사례(The Economic Case for nature)에서 인간이 자연자본 손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030년까지 연간 조 천억 달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물 부족 지역, 산림 보호구역 등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연자원을 식별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업장 근처의 생물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map/map.do)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식별결과 아래와 같이 법정지정종이 있다면 리스크와 기회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1-2	환경	생물다양성
항목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		
항목 설명	• 조직의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 복원, 확대하기 위한 조직의 접근 방식 확인 • 조직의 생물다양성 분야 단기/중장기 목표 및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내재화 수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이 회피(Avoid), 저감(Reduce), 복원(Restore), 재생(Regenerate), 변경(Transform) 등 생물다양성 보호 접근방식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생물다양성 보호 접근 방식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분류	접근방식
요건1	회피(Avoid) - 생물다양성 영향이 높은 지역 내 사업장 신축, 증설 제한 또는 보류	-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경우, 이를 상쇄하기까지 제한적 운영
요건2	저감(Reduce) -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 및 최소화하도록 설비 투자	- 환경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요건3	복원(Restore) - 사업장 주변 또는 인근 지역의 감소 또는 멸종된 생물종, 개체수 증진	- 생물종 및 개체수 유지·복원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노력
요건4	재생(Regenerate) - 사업장 주변 이외 자연·생물 자본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산림, 해양,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한 생물종 및 개체수 증대 유도

점검 기준	요건5	변경(Transform) - 생물다양성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장 또는 주변 지형 구조적 개선	- 부정적 환경영향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 참여 및 산업계 협력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조직이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파괴, 자연재해 등 자연의 변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금융적 리스크를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조직은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저해 및 손실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조직은 사업장 및 인근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접근방식에 기초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단기/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1) 회피(Avoid), 2) 저감(Reduce), 3) 복원(Restore), 4) 재생(Regenerate), 5) 변경(Transform)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1-3	환경	생물다양성
항목	산림보호 활동		
항목 설명	• 조직의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산림파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의 접근 방식 확인 • 조직이 이행하고 있는 산림보호 단기/중장기 목표와 산림보호 및 복원을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내재화 수준 점검 • 조직별 사업 연관성에 따라 본 지표의 선택적 적용을 권고		
성과 점검	조직의 사업장 및 인근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산림지역 조사'. '전사 목표 수립'. '이행 현황 확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산림보호 활동 관련 자료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요건1**		

<table>
<tr><td rowspan="2">기준</td><td>산림보호 혹은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수립한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리스크 관리 및 산림파괴 예방 등)
요건2
사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을 조사하고 주요 보호지역을 정의한 경우
(산림이 제공하는 경관 및 지형학/지질학적 특성,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등)
요건3
산림보호를 위해 전사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경우
(산림파괴 없는 사업 운영 구조 완성, 탄소상쇄 활동(REDD+ 등)에 대한 성과개선 목표 설정 등)
요건4
산림보호를 위한 단기/중장기 목표 수립 및 연도별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중장기 산림 보호-복원-확대 목표 이행 현황 및 목표 대비 이행률 점검 등)
요건5
산림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산림 보호 활동 및 성과 공유, 외부 전문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산림보호 활동을 통해 사업장 및 인근 지역의 녹지면적을 유지/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산림 탄소 흡수량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조직은 산림보호 및 산림파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림보호 또는 산림파괴 예방정책을 수립해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산림파괴를 예방하고, 공급업체 및 협력사 등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정책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2) 산림이 제공하는 경관 및 지형학/지질학적 특성,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구성/역할/잠재력, 기타 산림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교육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보호지역을 정의한다. 이때, 보호지역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자연 생태계 번성을 위한 신규조림 및 재조림, 개발도상국 산림 탄소상쇄 활동(REDD+)을 통한 온실가스 잔여 배출량 상쇄 등에 관한 전사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4) 산림 보호-복원-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의 효과성과 목표 대비 이행률, 목표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필요 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조정한다. 5) 조직의 산림 보호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내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림 보호 및 산림파괴 예방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한다.

• 조직은 산림보호 및 산림파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No gross deforestation(총체적 산림 벌채 없음) : 생산, 거래 및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모든 산림 벌채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약속
- No net deforestation(순 산림 벌채 없음) : 현재 발생한 산림파괴 및 손실에 대해 향후 재조림을 약속

2-3. 사회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1	사회	목표
항목	목표 수립 및 공시		
항목 설명	•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확인 •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사회분야 이슈에 대해서 정성/정량적인 목표를 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분야 핵심토픽에 대한 목표 및 성과 관리현황을 측정 [데이터 원천]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핵심토픽 리스트 핵심토픽 단기/중장기 성과목표 공시데이터(정성/정량) 핵심토픽 단기/중장기 이행현황 공시데이터(정성/정량)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 또는 조직의 사회 분야 추진 방향성을 나타내는 사회분야 경영 미션비전지향점이 없는 경우 **2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조직의 사회 분야 추진 방향성을 나타내는 사회분야 미션비전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조직의 사회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4단계** 조직의 사회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모든 중장기 목표가 정성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5단계** 조직의 사회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목표에는 정성 外 정량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통해 조직의 사업운영 및 외부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조직은 사업운영에 해당하는 모든 직/간접 사회 분야 규제를 관리해야 함과 동시에 사업성과와 연계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MBO)가 필요하다. 조직이 수립할 수 있는 사회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는 아래와 같다.

인권 리스크 저감	구성원 다양성 증진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산업재해율 저감
협력사 ESG 지원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지역사회 투자 확대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품질 및 안전 증진		

- 목표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작업행동의 직접적인 선행조건이다. 조직은 내부 성과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외신뢰성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 목표는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2)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여건상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3) 목표 대비 이행현황이 측정 가능한 계량적 형태이어야 한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제한이 명확해야 한다. 5) 목표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역량, 경영환경, 사업전략, 또는 최고경영진 등의 의지에 따라 사회 분야 목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직이 수립한 목표 수준의 타당성, 신뢰성,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가 1) 글로벌 합의에 준하는 수준인지(ex. ILO 기준에 따른 아동노동 금지), 2) 국내외 법/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인지(ex. 중대재해처벌 기준 준수), 3) 동종산업 평균에 맞춘 수준인지, 4) 산업 내 최고 기업을 지향하는 수준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단기와 중장기라고 구분하는 기간은 통상 연간 단위로 구분될 수 있다. 단, 조직이 직면한 대외환경, 산업경쟁, 기술개발 수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방식, 업무관행,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기간은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산업에 속한 조직은 단기를 년, 중장기를 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모델 변동이 크지 않거나, 안정적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조직은 단기를 년 이내, 중장기를 0년 이내로 볼 수도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사회 분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2-1</td><td>사회</td><td>노동</td></tr>
<tr><td>항목</td><td colspan="3">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채용에 투자하고 있는지, 조직의 고용 규모가 안정적인지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직전 1개년 신규 채용 지수가 조직의 3개년 평균값에 비해 초과인지, 지난 4개년 간 부가가치 증감률 대비 신규 채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① 신규 채용 지수 = (당해년도 신규 채용 인원 / 전년도 신규 채용 인원) / (당해년도 부가가치 / 전년도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영업손익 + 대손상각비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② 고용 규모 = 당해연도 총 인원 – 전년도 총 인원
* CAGR(연평균 증가율) 산식(4개년) : (최종 값 / 초기 값)∧(1/4) - 1</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추세(1/2)
1단계
직전 개년도 ‘신규 채용 지수’가 최근 년 지수 평균 값 미만
2단계
직전 개년도 ‘신규 채용 지수’가 최근 년 지수 평균 값 동일
3단계
직전 개년도 ‘신규 채용 지수’가 최근 년 지수 평균 값 초과

추세(1/2)
1단계
직전 4개년 연평균CAGR)적으로 ‘고용 규모’가 감소
2단계
직전 4개년 연평균CAGR)적으로 ‘고용 규모’가 유지
3단계
직전 4개년 연평균CAGR)적으로 ‘고용 규모’가 증가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추세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조직이 최근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신규 채용 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직전 4개년 ‘고용 규모’만으로 성과를 점검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신규채용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조직이 속해있는 산업의 특성, 조직 규모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신규채용 확대를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조직의 부가가치 창출 현황과 신규채용 인원을 통해 상대적인 신규채용 수준을 확인하고자 설계되었다.
- 본 항목에서의 신규채용이란 조직이 필요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서류 심사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근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새로운 인력이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중 비정규직 형태(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등)를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금근로자를 통칭하는 모든 정규직 채용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란 조직의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직의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한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조직의 부가가치를 분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해당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산식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참고하였다.
- 조직은 신규채용 과정에서 나이, 성별, 지역, 학력, 재산 등을 사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는 구직자에 대하여 1)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2	사회	노동
항목	정규직 비율		
항목 설명	•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 •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		
성과 점검	국내외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인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정규직 비율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 –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1)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		

<table>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최근 4개년 간 정규직 비율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0%인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0% 초과 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0% 초과 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0%를 초과하는 경우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본 항목에서 사용하는 정규직의 정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에 따라 1)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등)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금근로자를 통칭한다.
- 조직은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근로조건의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7% 지난 년간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비율과 조직, 사회의 지속가능성간의 명확한 관계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조직의 바람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및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이를 지원 및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만 본 항목은 조직의 정규직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이 사회적 고용안정성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본 항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권익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2-3</td><td>사회</td><td>노동</td></tr>
<tr><td>항목</td><td colspan="3">자발적 이직률</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동함을 의미하는 자발적 이직의 비율을 점검(산업적 특성 반영)</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국내외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률 증감 추이를 분석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자발적 퇴사(이직)율 = 해당연도 총 자발적 퇴사자(이직자) 수 / 해당연도 말 총 직원 수</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자발적 이직률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자발적 이직률이 감소 추세
* 자발적 이직률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단계로 적용하여 평가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이직(퇴사)은 조직의 인적자원에 대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직은 조직의 인건비 지출 감소나 이직으로 인한 채용 등 비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이직률은 근로자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만족의 정도나 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
- 근로자의 이직(퇴사)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경우는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이나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정년퇴직, 사망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직(퇴사)을 통칭한다.
- 본 항목은 조직의 직전 개년도 ‘동종산업 평균퇴사(이직)율’을 활용하여 4개년 간의 이직률 추세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조직의 상대적인 인적자원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간 이직률(퇴사율)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조직의 이직률(퇴사율)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이직률(퇴사율)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조직의 과거 퇴사율(Business As Usual, BAU)과 비교하는 방식,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달성도와 비교하는 방식,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경쟁조직의 이직률(퇴사율) 정보는 각 조직의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고용노동 관련 통계자료(산업/규모별 고용현황 등) 등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보고기간 동안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를 포괄한 조직의 이직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직률 정보를 나이(Age), 성(Gender), 지역(Region)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연령이나 성별 간 이직률의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조직에 잠재적인 불평등, 차별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4	사회	노동
항목	교육훈련비		
항목 설명	• 조직이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 •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의 인당 교육훈련비를 점검. 최근 5개 회계연도의 1인당 교육훈련비 추세를 함께 고려		
성과 점검	조직이 과거 4개년의 1인당 교육훈련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데이터 산식] 1인당 교육훈련비 = 직전 1개년도 교육훈련 지출 비용 / 해당연도 말 총 구성원 수		
점검 기준	**1단계** 지난 4개년 인당 교육훈련비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인당 교육훈련비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인당 교육훈련비 증가 추세 * 최근 4개년 간 교육훈련비가 없거나, 1인당 교육훈련비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단계로 적용하여 평가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훈련의 성과는 조직의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시장 경쟁력을 높이게 한다. 조직은 단기적인 이익창출과 교육훈련을 통한 장기적 성과 회수 사이의 괴리로 인해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의 경영성과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훈련비는 조직의 미래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인적자원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조직의 총 구성원 수 대비 교육훈련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직의 규모, R&D 투자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항목을 활용하는 조직은 '원단위' 개념에서 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등 조직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항목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며, 과거 개년도의 인당 교육훈련비 추세를 함께 반영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항목에서의 조직의 교육훈련비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조직의 과거 교육훈련 비용(Business As Usual, BAU)과 비교하는 방식,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비교하는 방식,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인당 교육훈련비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경쟁조직의 교육훈련비 정보는 각 조직의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에서는 조직 구성원 인 기준의 연간 평균 교육훈련 시간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GRI는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지적 기반을 증대시키고 인적자원을 유지 개선시키는 일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명시하며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2-5</td><td>사회</td><td>노동</td></tr>
<tr><td>항목</td><td colspan="3">복리후생비</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임직원의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법률상 강제성이 있는 법정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조직별 복리후생비를 확인
•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의 인당 복리후생비를 점검 (최근 4개 회계연도의 1인당 복리후생비 추세 고려)</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이 과거 4개년의 1인당 복리후생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데이터 산식] 1인당 복리후생비 = 직전 1개년도 복리후생비 / 직전 1개년도 말 총 구성원 수</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지난 4개년 인당 복리후생비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인당 복리후생비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인당 복리후생비 증가 추세
* 최근 4개년 간 1인당 복리후생비 정보 없는 경우 0점 적용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단계로 적용하여 평가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복리후생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임금성 보상으로 기업복지, 근로복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로 불리는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복리후생이 구직자가 조직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자리 잡는 등 노동과 복리후생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구성원의 만족도, 핵심 인재의 확보와 유지 및 조직의 몰입도와 성과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조직들은 효과적인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은 법률로 명시되어 강제성이 부여된 법정 복리후생과 그 외의 복리후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복리후생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며, 그 이외의 복리후생으로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심리상담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직별로 다양한 제도들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정 복리후생의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직이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 항목의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을 제외한 각 조직의 복리후생을 의미한다.
- 복리후생비는 조직의 총 구성원 수 대비 복리후생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산업의 특성, 조직의 규모(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등)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항목을 활용하는 조직은 '원단위' 개념에서 조직의 매출액, 생산량 등 조직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항목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요소인 조직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인당 복리후생비를 산정, 과거 개년도의 인당 복리후생비 추세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항목에서의 조직의 복리후생비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에는 1) 조직의 과거 복리후생 비용(Business As Usual, BAU)과 비교하는 방식,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비교하는 방식,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 인당 복리후생비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몇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 경쟁조직의 복리후생비 정보는 각 조직의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6	사회	노동
항목	결사의 자유 보장		
항목 설명	• 조직의 직원이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서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이해대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는지 확인 - (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 - (노사협력)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수준을 점검		

<table>
<tr><td>성과
점검</td><td>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조직 및 단체협약 체결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측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사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운영 수준 등을 측정
[활용 데이터] 노동조합 가입·설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위반 여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의결(합의) 여부 등
[데이터 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단, 노동조합 가입·설립 또는 노사협의회 설치 시점이 개 회계연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노동조합 가입·설립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부분을 대체지표로 사용
1단계
노동조합 가입·설립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정보가 모두 없음
(노조 가입·신설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 판정 또는 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2단계
노동조합 가입·설립 또는 상시근로자 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위원 선임 협의회규정 제정 등
3단계
2단계 과거 또는 현재 적법한 교섭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진행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회의록 작성·비치)
4단계
3단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외 추가 임시회의(노사 실무협의 포함) 개최
5단계
4단계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단체협약 위반 시 불이행으로 간주 + 노사협의회 의결합의 여부</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형태에 따라 오픈숍(Open Shop)과 유니온숍(Union Shop)의 경우가 있으며, 해당 지표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두 가지 가입 형태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을 대체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 노사관계 당사자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을 각 인 이상 0인 이하의 범위에서 동수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 구성해야 하며,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15일 이내)함으로써 그 설치가 마무리 된다.
- 노사협의회는 법률에 따른 협의, 의결사항 등에 대해 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1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항목 여성	구성원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의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급의 구성원 다양성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국내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다양성 기준 중 성별에 따른 다양성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이를 위해, 조직의 남성 구성원 대비 여성 구성원(또는 여성 구성원 대비 남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직급별로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여성 구성원 비율 = 직전 회계연도 말 여성 구성원 수 (전체, 미등기임원)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구성원 수 (전체, 미등기임원)		
점검 기준	**1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0%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0% 초과 8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0% 초과 6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0% 초과 4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0% 이하인 경우 * 단, 결과값이 '-' 일 경우 본 지표에서 고려한 조직형태와 다른 경우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table>

추가 설명

-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과, 미등기임원 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하는 이유는 조직이 여성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성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여성 구성원 비율 차이 산식(%) : 100 - (직전 회계연도 말 여성 미등기임원 수/직전 회계연도 말 총 미등기임원 수)/(직전 회계연도 말 총 여성 구성원 수/직전 회계연도 말 총 구성원 수)
- 조직은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 여성 구성원 비율을 기준으로도 '여성 구성원 비율'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직급별 :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직무별 여성 구성원 비율 :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 조직의 가치사슬 상 주요 직무를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근속연수별 여성 구성원 비율 : '3년 미만',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 15년', '15년 이상' 등 구성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지역별 여성 구성원 비율 : '국내와 해외' 또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 국가' 등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단, 조직의 인사제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인해 직급체계가 변경된 경우, 개별 조직이 운영하는 직급체계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 일반적 기준과 연계해 봄으로써 '직급별 여성 구성원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각 조직의 직급체계를 일반적 직급 기준과 연계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조직 A	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	책임매니저	프로
조직 B	G9	G8	G7	G6	G5
조직 C	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 조직은 직급이 상승할수록 여성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내부 관점에서 점검할 수도 있지만, 1) 경쟁조직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로도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다양성 범주를 '성별'로만 한정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조직의 경영환경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범주를 달리 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성별' 외 다양성 범주에는 '연령, 민족, 인종, 국적, 연령,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 등'이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2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항목	여성 급여 비율 (평균 급여액 대비)		
항목 설명	• 조직이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사유로 임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 확인 • 국내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중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 조직의 남/여 구성원 중 평균 급여액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으로써,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또는 남성인 평균 급여액 비율을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차이를 측정 ※ 조직의 남여 구성원 중 평균 급여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함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 = 직전 회계연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 직전 회계연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점검 기준	**1단계** 조직의 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0% 이하인 경우 **2단계** 조직의 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0% 초과 7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0% 초과 8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0% 초과 9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0%를 초과하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여성(또는 남성) 급여 비율로 성과를 점검하는 이유는 조직이 성별 다양성 증진 활동의 결과물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직의 성별 다양성 증진 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상위 직급에 여성의 분포가 높아졌거나, 여성의 근속연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는 여성의 평균 급여액이라는 데이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구성원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이 0% 이내, 또는 동일한 경우, 해당 조직의 다양성 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본 '여성 급여 비율' 항목 정의서의 '1인 평균 급여액'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제1019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 급여(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를 회계연도 말(일반적으로 매년 2월 1일) 구성원 총수로 나눈 값이다.
- 조직은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 여성 급여 비율을 기준으로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직급별 :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여성 급여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직무별 여성 구성원 비율 :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 조직의 가치사슬 상 주요 직무를 기준으로 여성 급여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근속연수별 여성 구성원 비율 : '3년 미만',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 15년', '15년 이상' 등 구성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여성 급여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지역별 여성 구성원 비율 : '국내와 해외' 또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 국가' 등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여성 급여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조직은 여성 인 평균 급여액과 전체 구성원 인 평균 급여액 간 차이가 높은지/낮은지를 내부 관점에서 점검할 수도 있지만, 1) 경쟁조직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로도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다양성 범주를 '성별'로만 한정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조직의 경영환경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범주를 달리 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성별' 외 다양성 범주에는 '연령, 민족, 인종, 국적, 연령,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 등'이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통계’ 上 산업,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3-3</td><td>사회</td><td>다양성 및 양성평등</td></tr>
<tr><td>항목</td><td>장애인 고용률</td><td></td><td></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직이 해당 권리 향상을 지원하는지 확인
•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조직이 해당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비교)</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이 직전 1개 회계연도 장애인 고용률을 법적 의무고용률과 비교하여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데이터 산식] 장애인 고용률 = Σ(월별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Σ(월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 해당 월 15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직전 개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0% 미만일 경우
2단계
직전 개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0% 이상 0% 미만 수준인 경우
3단계
직전 개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0% 이상 00% 미만 수준인 경우
4단계
직전 개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00% 이상 20% 미만 수준인 경우
5단계
직전 개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20% 이상 수준인 경우
※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납부 시에도 실제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명으로 계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통해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의무고용률을 공시하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별도 적용하며 상세내용은 아

래 표와 같다.

기준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4%	3.6%	3.6%	3.8%
	비공무원	3.4%	3.6%	3.6%	3.8%
공공기관		3.4%	3.6%	3.6%	3.8%
민간기업		3.1%	3.1%	3.1%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조직에게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이상 고용한 경우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적용 (2025년 신고)	1,237,000원	1,311,220원	1,484,400원	1,731,800원	2,060,740원
가산율	-	6% 가산	20% 가산	40% 가산	해당연도 최저임금

- 조직은 장애인 고용률 성과를 의무고용률과 비교하여 점검하는 방식 外, 1) 동종산업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 대비, 2)조직의 과거년도 장애인 고용률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애인 고용 목표 대비로도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퇴사율(이직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통계' 上 산업/규모별 고용현황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1	사회	산업안전
항목	안전보건 추진체계		
항목 설명	• 조직이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생산성 및 품질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건강·복지 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④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⑤평가 및 개선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정책, 안전보건 관리 규정		

<table>
<tr><td></td><td>[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요건1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는 경우
(안전경영방침 공표, 인력·시설·장비 등 배정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요건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 경우
(안전보건 정보공개, 구성원 참여절차 마련, 의견제시 문화 조성 등)
요건3
조직의 위험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제거·대체·통제 조치를 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방안 마련 교육훈련 실시
요건4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위험요인별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주기적 훈련, 사업장 내 도급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호 여부)
요건5
안전보건 과제 및 목표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경우
(목표 설정, 계획대비 달성 여부 평가, 문제점에 대한 주기적 검토와 개선)</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
<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다. 최근 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SG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이 발생하고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손실추정액 29조 9,841억 원, 근로손실일수 5,534만 일<’20년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환경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안전보건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최고 경영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이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제 규격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조직이 안전보건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 규격(ISO45001, KOSHA-MS 등)으로 심사, 인증하는 방식
  - 제3자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검증 :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이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제3자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방식
  - 내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 안전보건경영 추진체계가 국내외 규격의 요구사항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직 내부에서 선발된 심사요원이 심사하는 방식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2	사회	산업안전

항목 산업재해율

항목 설명 • 조직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 (국내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추이 분석)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산업재해율이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上 산업재해 현황분석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산업재해율 = (재해자 수 / 연 평균 근로자 수) * 100

점검 기준 1단계

지난 4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

* 최근 4개년 간 산업재해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무재해의 경우에는 100점 적용
* '유지 추세'로 판단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여 평가
* 3개년 이하 데이터 보유 시 해당 데이터로 추세 산정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재해율(천인율)을 기본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 조직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아래와 같다,

  (국내)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시행 2001.1.1.)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름

  - 도수율(또는 빈도율) = (재해발생 건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000
  - 강도율 = (총 근로손실일 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

  (해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USA 기준을 따름

  - LTIR(Lost Time Injury Rate) = (Number of LTI / Number of Hours worked 1) * 200,000
    사고(사망, 영구장애 동반 사고, 1일 이상 업무 종사할 수 없는 사고 포함)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비율
  - TRIR(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Number of RI / Number of Hour worked) * 200,000
    기록을 해야 하는 사고의 비율(MTC(Medical Treated Case), LTI(Lost Time Injury), FAT(Fatality) 포함)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개인질병,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에서 제외한다.
- 조직은 '산업재해율' 관리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비교'하는 방식 外 1) 조직의 과거년도 재해율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2) 조직이 지향하는 산업재해 저감 방향성 대비,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산업재해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上 산업재해 현황분석
- 조직이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율'의 관리범위는 조직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협력사 및 관계사의 경우 '협력사 SG경영' 진단항목에서 다루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5-1</td><td>사회</td><td>인권</td></tr>
<tr><td>항목</td><td colspan="3">인권정책 수립</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데이터 원천] 조직의 인권정책 내 아래의 이슈 중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 준수, 3) 인도적 대우, 4) 강제근로 금지,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산업안전 보장,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고객의 인권 보호, 10) 기타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조직의 대외공식적 인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권정책이 있으나 상기의 이슈 중 ~2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2단계
상기의 이슈 중 ~4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3단계
상기의 이슈 중 ~6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4단계
상기의 이슈 중 ~8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5단계
상기의 이슈 중 개 이상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본 ‘인권정책 수립’ 항목 정의서는 N, ILO, OECD 등에서 제시하는 인권 분야 이슈에 대해 조직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각 인권 이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단, 제도, 상관습, 사회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인권 이슈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 차별금지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근로조건 준수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제공함.

또한,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 인도적 대우 : 구성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 강제근로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 것
- 아동노동 착취 금지 :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로 인한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것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 산업안전 보장 :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하는 것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
- 고객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 조직의 인권정책은 '인권 이슈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적/내용적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식적 성명서
- 인권리스크 저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설명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담당조직과 그 역할
- 인권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 인권정책 제/개정일자, 정책문서 관리번호, 정책문서 담당자 및 승인자 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2	사회	인권
항목	인권 리스크 평가		
항목 설명	• 조직의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직접고용 임직원, 협력사 근로자, 기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원주민 등)이 직면하거나, 또는 해당 구성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에 따라 실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의 구체화 및 실제 기능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인권정책,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단계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단,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운용하지 않은 경우 **3단계**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권 리스크 진단 행위만 실시한 경우 **4단계**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의 진단과 함께 고위험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까지 실시한 경우 **5단계**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단 및 현장실사 행위를 실시한 경우 또한 확인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활동을 추진한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조직의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란 진단-실사-개선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인권 리스크를 진단, 실사, 개선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인권 리스크 진단 : 조직의 사업운영 단위 또는 관련 구성원 중 인권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인권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운영 단위 또는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직에 잠재해 있거나, 직면한 리스크는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 2) 조직의 직무별, 3) 구성원 직급별, 4)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 5)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 리스크 진단은 서면 또는 온라인 형태의 질의지를 통해 실시된다.
  - 인권 리스크 실사 : 인권 리스크 진단을 통해 확인한 잠재/직면 리스크 중 사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험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권 리스크 진단 결과, 고위험으로 추정되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스크의 사실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인권 리스크 실사는 현장에서 문서 등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련 구성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인권 리스크 개선 : 인권 리스크 진단 및 실사 결과,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나, 향후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확정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하는 행위이다. 조직은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리스크를 즉시 개선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6-1</td><td>사회</td><td>동반성장</td></tr>
<tr><td>항목</td><td colspan="3">협력사 ESG 경영</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협력사가 직면한 ESG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협력사에 잠재되어 있는 ESG 리스크가 조직에게 전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
• 조직이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 체계에 따라 실제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실사-개선하고 있는지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협력사 행동규범,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해당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용하지 않은 경우
3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리스크 진단 행위만 실시한 경우
4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의 진단과 함께 고위험 ESG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행위까지 실시한 경우
5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단 및 현장실사 행위를 실시한 경우 또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활동 추진한 경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ESG 리스크를 관리할 협력사 범위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넓게는 조직의 모든 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조직의 전략적 판단 하에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협력사에 대해서만 ESG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있다. 이 때, 핵심 협력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으며, 조직

은 개 기준만을 사용하거나, 복수 기준을 사용하여 핵심 협력사를 분류할 수 있다.
- 핵심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 대체불가능한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 구매 또는 거래금액이 높은 협력사
-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
-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 기타. 조직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협력사

• 조직의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란 진단-실사-개선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협력사 ESG리스크를 진단, 실사, 개선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 : 조직의 협력사 중 ESG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ESG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협력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협력사에 잠재해 있거나, 직면한 ESG 리스크는 1) 협력사가 위치한 지역, 2) 협력사가 속한 산업, 3) 협력사의 사업규모, 4) 협력사의 사업운영 방식, 5) 협력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은 서면 또는 온라인 형태의 설문서를 통해 실시된다.
  - 협력사 ESG 리스크 실사 : 리스크 진단을 통해 확인한 잠재/직면 리스크 중 사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험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리스크 진단 결과, 고위험으로 추정되는 ESG 리스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스크의 사실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협력사 ESG 리스크 실사는 현장에서 문서 등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련 구성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협력사 ESG 리스크 개선 : 리스크 진단 및 실사 결과,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나, 향후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확정한 ESG 리스크에 대해 개선하는 행위이다.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리스크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2	사회	동반성장
항목	협력사 ESG 지원		
항목 설명	• 조직이 협력사 ESG 관리에 있어 진단-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 외,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협력사의 ESG 지원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과 함께, 협력사 ESG 지원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 단,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반적인 협력사 지원방안 내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음		
성과	협력사의 ESG 지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table>
<tr><td>점검</td><td>[데이터 원천] 협력사 동반성장/상생협력 추진계획, 협력사 ESG 지원계획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요건1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공식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경우
요건2
협력사 ESG 지원 전략방향, 추진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협력사 ESG 지원 전략방향 및 추진영역별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KPIs)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5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KPIs) 달성을 위해 투자재원(예산), 역량투입(인력) 방안을 마련한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
<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협력사 ESG 지원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의 협력사 ESG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협력사 ESG 지원 계획에는 1) 전략적 방향, 2) 전략방향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3) 세부 추진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 전략 방향 : '협력사 ESG 지원 전략 방향'은 조직의 ESG 미션비전목표와 연동될 수 있으며 조직의 공급망 관리 전략과도 연동될 수 있다. 이는 협력사 ESG 지원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 세부 추진과제 : '협력사 ESG 지원 세부 추진과제'는 전략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이행해야 할 활동이다 해당 활동은 설비/장치 등을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활동, 또는 정책/지침 등을 제정하는 문서작업일수도 있으며, 상생협력을 위한 결제기간 설정 및 결제지연 방지 노력, 교육/확산 등 구성원 간 네트워킹 과정일수도 있다.
  - 성과관리 지표 : 전략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협력사 ESG 인식 개선이 추진과제라면 성과관리 지표는 'ESG 교육 참여율'이 될 수 있으며 협력사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과제라면 성과관리 지표는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될 수 있다
-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협력사 지원계획(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추진계획 등) 내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협력사

ESG 지원' 항목 정의서에서는 조직이 '별도의 협력사 ESG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와, '기존 협력사 지원계획' 내 ESG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모두를 인정한다.

-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 계획을 수립 시 전략방향, 추진과제, 성과지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 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1) 협력사 ESG 지원을 통해 조직 또는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익, 2)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 ESG지원 대상 협력사 범위, 3) 협력사 ESG 지원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투자예산, 운영인력 등), 4) 협력사 ESG 지원 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외부 협력체계, 5)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전략방향 달성 후 xit 계획 등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6-3</td><td>사회</td><td>동반성장</td></tr>
<tr><td>항목</td><td colspan="3">협력사 ESG 협약사항</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협력사 ESG 지원을 상생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이자,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사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사 ESG 지원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협력사와 협약을 통해 ESG 지원을 다각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협력사 ESG 지원 협약사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요건 1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교육 운영 지원 협약 체결
요건 2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R&D 지원 협약 체결
요건 3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금융 및 자금 지원 협약 체결
요건 4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 지원 협약 체결
요건 5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설비/장치 도입 지원 협약 체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
<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협력사 ESG 협약의 경우 조직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사의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수출기업화 촉진 등을 위해 예산 인력이 부족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 대응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통칭하며, 주요한 분류는 아래와 같다.
  1) 교육지원 : ESG 관련 품질관리, 안전보건, 외국어 교육, 직무 및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2) 기술지원 : ESG 관련 특허개방,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보호 등
  3) 금융지원 : ESG 관련 성과개선 인센티브 지급, 상생펀드 운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현황 등
  4) 인허가 지원 : ESG 관련 각종 대내외 인증서 취득, 검증의견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5) 설비/장치 지원 : 친환경, 또는 스마트 설비 신규 설치, 산업용 장치 구조적 개선 등
- 조직이 '협력사 ESG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인 경우 공정거래협약 공표 및 세부 내용에 따라 '협력사 ESG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7-1	사회	지역사회
항목	전략적 사회공헌		
항목 설명	•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License to Operate)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사회공헌 전략, 사회공헌 분야/영역, 사회공헌 성과지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요건1** 조직의 사회공헌을 대표할 수 있으며, 대사회적 메시지로써 활용되는 사회공헌 비전, 미션, 또는 슬로건이 있는 경우 **요건2** 조직의 사회공헌 비전, 미션, 또는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조직의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조직의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요건5** 조직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사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KPIs)가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과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된 것을 사회공헌 전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헌 전략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회공헌 비전 및 슬로건, 중점 추진분야, 사회공헌 사업 전략, 특정 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로드맵, 세부 실행계획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사업 목표 및 PIs, 성과평가 및 홍보계획, 예산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조직의 사회공헌 비전, 미션 등은 조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업 특성이란 사업운영 방식, 고객 관계 및 형태(B2C, B2B),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적 특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조직은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사업적 기여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다.
- 조직의 사회공헌 분야/영역은 사회공헌 비전, 미션, 슬로건 등과 연계되어 있거나, 사업적/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일회성/기부성 프로그램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회공헌 분야/영역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조직의 사회공헌 인지도는 조직의 대표 프로그램 운영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각 조직의 사업적 특성,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일반적 사회공헌 활동과는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 사업 환경 등 대외적 변화, 대표 프로그램에 따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측정 및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성과관리 지표(KPIs)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조직은 사회공헌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사회공헌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개정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
- 사회공헌 담당조직의 공식적 업무분장 및 담당조직 전문성 향상 방안
- 대외 사회공헌 및 기부 요청을 검토하는 기준/프로세스 운영
- 사회공헌 프로그램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관리 기준
- 사회공헌에 필요한 기부금 출연 및 집행 기준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7-2</td><td>사회</td><td>지역사회</td></tr>
<tr><td>항목</td><td colspan="3">구성원 봉사참여</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성원에게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이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
•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데이터 원천]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측정
1) 구성원 KPIs 내 봉사활동 반영, 2) 봉사활동 참여 유급휴가, 3) 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4)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금전적 포상, 5)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표창, 6) 자율봉사자 대상 네트워킹 모임 지원, 7) 자원봉사처 연계, 8) 기타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2단계
현재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나 향후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계획이 수립된 경우
3단계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4단계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5단계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개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구성원의 자기결정권 주장,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따라,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방식에

서 벗어나, 조직이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에게 자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자원봉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금전적, 비금전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조직은 구성원에게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조직 게시판 및 사보 등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자 현황 및 공로를 알림
  -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물건(기념품) 제공
  -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발견 및 제거
  -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사회관계적 문제 해결
  -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
  - 우수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포상
  - 조직 구성원 성과평가지표(KPIs) 내 자원봉사를 반영
- 조직이 구성원의 봉사활동 참여현황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봉사활동 참여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봉사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 : 1인 당 봉사활동 투입시간 * 투입인원 수
  - 봉사활동 참여 시간의 금전적 가치 : 1인 당 봉사활동 투입시간 * 투입인원 수 * 최저임금 or 평균임금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8-1	사회	정보보호
항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항목 설명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 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모의해킹 등 취약성 분석,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무 또는 자율),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		
성과 점검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규정, 정보보호 추진 계획 및 결과, 정보보호 공시 내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요건1**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급 구성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2**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제3자(또는 규제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요건3** 모의해킹 등 외부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정보보호 공시(의무 또는 자율)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요건5** 정보보호 시스템의 손상 또는 외부공격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table>

추가 설명

- 정보보호 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도,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거나, 또는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 있다. 이 중 정보보안 설비/장치에 대한 기술적(암호기술, 접근통제, 백업체제 등), 물리적(출입통제, 시건장치, 장비고도화 등) 수단에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항목 정의서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수단(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 조직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 수행, 위험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지는 임원이나 관리자급 구성원을 지칭함
  -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 조직이 각종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3자기관이 인증하는 것으로써, ISMS 인증, ISO/IEC 27001인증이 있음 (※정보보호 제품 인증인 C인증 GS인증은 제외함
  - 취약성 분석 : 조직의 정보보호 시스템이 가진 위협을 조사, 평가하고, 해당 위험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으로써, DDoS 모의훈련, 모의해킹, 웹로그 침해가능성 분석 등의 취약성 분석 방식이 활용됨
  - 정보보호 공시 이행 : 조직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향상, 조직의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지속적 보안투자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참고)

- 정보보안 사고 보험 가입 : 조직의 정보자산에는 지적재산권, 영업상 비밀, 기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비용 손실을 초래함.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이 비용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1) 조직의 전체 사업장 중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제3자 인증을 획득한 비율, 2)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개선 주기, 3) 정보보안 중요성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수준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S-8-2</td><td>사회</td><td>정보보호</td></tr>
<tr><td>항목</td><td colspan="3">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 체계를 갖추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정보보호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현황을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지난 4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감점
= Σ(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유형 1
지난 4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 2
지난 4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 3
지난 4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감점 사항이 없을 경우, 본 항목의 점수는 100점으로 산정. 최저점은 0점으로 제한</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table>
<tr><td>유형 1</td><td>유형 2</td><td>유형 3</td></tr>
<tr><td>-50점</td><td>-30점</td><td>-1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①또는 ②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조직은 확정판결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개인정보 법/규제 건수 外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 영향이나 평판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산업, 경쟁조직의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9-1	사회	사회 법/규제 위반
항목	사회 법/규제 위반		
항목 설명	• 조직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사회 영역의 투자/유지/보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사회영역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 간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총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 감점 (사회 법/규제 위반 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table>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유형 1
지난 4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 2
지난 4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 3
지난 4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감점 사항이 없을 경우, 본 항목의 점수는 100점으로 산정. 최저점은 0점으로 제한</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table><tr><td>유형 1</td><td>유형 2</td><td>유형 3</td></tr><tr><td>-50점</td><td>-30점</td><td>-1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사회 법/규제 위반은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사회 영역에서 포함하는 범주(노동, 인권, 안전보건, 정보보호, 공정거래, 고객가치 등)의 관련 법/규제 사항들이 금지하는 행동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사회 법/규제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는 아래 언급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 내 범주에서 참고하는 개별 사회 분야 법/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조직은 확정판결된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 이상인 경우)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사회 법/규제 건수 外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사회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 영향이나 평판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 산업, 경쟁조직의 사회 법/규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4. 지배구조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1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항목 설명	•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ESG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ESG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조직의 ESG 경영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1) 활동내역, 2) 운영규정의 2가지를 점검 • 조직은 ESG 안건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ESG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사회 또는 기존의 산하 위원회(사회책임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를 통해서도 ESG 안건을 다룰 수 있음		
성과 점검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활동 내역 중 ESG 안건을 보고/심의/의결하였는지,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 상 '권한과 역할'에 ESG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개최 내역,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영역1 (1/2)** **1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서 ESG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최근 년간 ESG 관련 안건이 모두 보고 사항인 경우 **3단계** 최근 년간 ESG 관련 안건 중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역2 (1/2)** **1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라는 단어만 기재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 이외에 조직과 관련된 중요 ESG 이슈 또는 안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영역1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영역2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ESG가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안건을 검토/심의/의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조직은 이사회에서 SG와 관련한 중요 안건을 보고받거나, 심의/의결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관련 안건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역할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조직은 ESG 안건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나, 이사회, 또는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사회책임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거번너스위원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를 통해서도 ESG 안건을 다룰 수 있다. 즉, 'ESG위원회' 설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원회에서라도 ESG 안건을 제대로 검토/심의/의결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ESG 안건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1)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를 명시하는 형식적 요건과, 2)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서 다루는 ESG 안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형식적 요건 필요성 : 이사회 또는 산하 ESG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소집 및 운영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실질적 요건 필요성 :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단순히 ESG 관련 안건을 보고만 받는다면, 이는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ESG에 대한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는 조직에 산재해 있는 중요 ESG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해야 함
- 특히,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해당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SG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ESG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ESG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건을 주로 검토/심의/의결하는지를 담아야 한다. 운영규정 상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는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다.

ESG 업무를 기준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시	ESG 분야를 기준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시
다음의 SG와 관련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한다 1. ESG 전략 및 정책 제정에 관한 사항 2. ESG 활동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관한 사항	다음의 ESG와 관련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한다. 1. 조직의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사회공헌 추진에 관한 사항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2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사외이사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이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 • 경영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기업 발전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비율이 충분한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 조직이 선임한 모든 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독립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사외이사는 해당 비율에서 제외한다.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이사회에 관한 사항] [데이터 기간] 지난 1개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총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으나 사외이사가 인인 경우 **2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 중 0% 미만인 경우 **3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 전체 이사 중 0% 이상 70% 미만인 경우 **4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 전체 이사 중 0% 이상 80% 미만인 경우 **5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 전체 이사 중 0% 이상인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이사회가 조직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언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은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의결사항에 상당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 비율은 이사회가 경영진 등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사외이사 비율 최소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직은 해당 최소요건을 상회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 (「상법」제42조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분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조직은 「상법」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을 검토함고 있으므로, 조직이 선임한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항목 정의서의 '사외이사 비율' 산정 시, 독립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이슈가 제기되었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본 '사외이사 비율' 항목 정의서의 점검 기준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3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항목 설명	•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여부를 확인 • 이사회의 의장과 경영진의 대표인 대표이사와의 분리 여부 및 선임사외이사 임명 등을 점검		
성과 점검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이사회에 관한 사항] [데이터 기간] 지난 1개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한 경우 **2단계** 과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자가 현재 이사회 의장인 경우 **3단계** 현재 이사회 의장이 과거 또는 현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지 않았으나 모회사		

<table>
<tr><td></td><td>또는 자회사의 임원 등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4단계
과거 또는 현재 대표이사이거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였거나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현재 이사회 의장인 경우
단, 이사회 의장과 이해관계 상충하는 안건 등에 있어, 이사회 의장 역할을 대신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있는 경우
5단계
과거 또는 현재 대표이사이거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적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가 현재 이사회의 의장인 경우</td></tr>
<tr><td></td><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하다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성을 갖춘 선임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에서 대표이사의 이해와 관계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 의장을 대리하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대표로 사내이사 및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내외 법/규제, ESG 평가기관 등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 임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표 이용자는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요건을 참고 및 응용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조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함
  - (S&P Global)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거나, 선임사외이사가 임명되면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 (MSCI) 조직의 창립자, 현직/전직 CEO, CFO 등의 경영진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예시

「상법」제382조 사외이사 결격사유)
1.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최근 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S&P Global」Independence Directors Criteria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1. 이사가 지난 1년간 해당 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2.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또는 이사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 또는 모회사 및 자회사로부터 연간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3. 이사는 "회사 또는 회사의 모회사나 자회사가 임원으로 고용한 ...] 개인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 4. 이사는 회사의 고문이나 컨설턴트 또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또한 그러한 회사와 관계가 없어야 함) 5.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관련이 없는 경우 6. 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개인적인 서비스 계약이 없는 경우 7. 이사가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와 관계가 없어야 함 8. 이사가 최근 1년간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이 아닌 경우 9. 이사는 이사회가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른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4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항목	이사회 성별 다양성		
항목 설명	•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다양성과 포용성의 대표적인 분류인 남성 대비 여성 비율(혹은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을 점검		
성과 점검	이사회 구성원 전체 대비 여성 이사 비율이 충분히 높은 수준인지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전자공시시스템[사업보고서-이사회에 관한 사항] [데이터 기간] 지난 1개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이사회 여성 비율 = (여성 이사 수 / 전체 이사회 구성원 수)		
점검 기준	**1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명만 선임되어 있는 경우 **3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0% 이상 20% 미만인 경우 **4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0% 이상 30% 미만인 경우		

	5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0% 이상인 경우 * 이사회 내 다수 성(性)이 여성일 경우에는 반대로 적용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지표는 이러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기준 중 하나인 성(性) 비율을 통해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별에서 기인하는 특정한 관점,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난 다양한 의견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독립적이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부족한 실정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대규모 상장법인(자산총액 조원 이상)의 이사회 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다만,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가 단순 남성·여성 이사에 대한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 남성·여성 이사를 고르게 확보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성과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 국내외 법/규제, ESG 평가기관 등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표 이용자는 각 기관에서 요건을 참고 및 응용할 수 있다.
  - (S&P Global)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40% ~ 60%인 경우, 이사회 균형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 (MSCI)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사회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 (국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함
  -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법 제826호) 이사회가 5명일 시 특정 성(性)의 이사를 최소 2명 6명 이상일 시 최소 3명 선임해야 함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G-1-5</td><td>지배구조</td><td>이사회 구성</td></tr>
<tr><td>항목</td><td colspan="3">사외이사 전문성</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조직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사외이사가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 (사외이사가 동종산업의 업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업무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데이터 원천] 사외이사 경력사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2단계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명 이상인 경우
3단계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0% 이상인 경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란 사내이사(경영진 등)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제언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다. 이때, 해당 산업 전문지식과 경력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실무자 또는 경영진으로써 재직하였거나, 관련 연구기관 및 서비스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및 학술기관 경력은 제외한다.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산업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비율'을 평가지표로 운용하고 있으며, 조직은 사외이사 선임 시 평가기관 등이 제시하는 '산업 전문성' 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 (S&P Global) 국제산업분류표준(GICS) Level 1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동종산업 내 전문지식 및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이사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함
  - (MSCI) 국제산업분류표준(GICS) 기준으로 동일한 산업분류 내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만을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규정함

※ S&P Global은 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Level 1 Sectors기준의 동종산업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Energy	Materials
Industrials	Consumer Discretionary
Consumer Staples	Healthcare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 Services	Utilities
Real Estate	

• 단,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의 복잡성 및 다양성이 높은 경우, 사외이사의 업무 경력이 조직의 사업운영 방식, 제품 및 서비스 특징, 공급망 특수성 등과 충분한 관련이 있다면 동종산업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예시1) 조직이 식품생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한 식품의 주요 판매채널이 온라인인 경우, 전자상거래나 유통 분야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동종산업 경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 예시2) 조직이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래 사업으로 '온라인 금융Fin-Tech)' 에 집중하는 경우 금융보험, 증권 분야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동종산업 경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2-1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항목	전체 이사 출석률		
항목 설명	•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률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 점검	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 = Σ(출석한 전체 이사 인원 수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		
점검 기준	**1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5% 미만인 경우 **2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5% 이상 5% 미만인 경우 **3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5% 이상 0% 미만인 경우 **4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0% 이상 5% 미만인 경우 **5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5% 이상인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상법」에서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출석률은 이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특히 「상법」제393조 제4항은 "이사는 월에 회 이상 업무의 진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사내이사'와 보고받는 '사외이사'가 년 동안 최소 회는 이사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사회 참여는 법/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관주의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의 자율사항이다. 따라서 개별 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여를 강제할 수 없으나, 이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 회의 참석률을 설정하는 방식, 2) 이사회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타 직무 수를 제한하는 방식, 3)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
- 조직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상정한다든지, 이사가 조직경영을 하거나,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사회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유인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참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2-2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항목	사내이사 출석률		
항목 설명	•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특히, 조직의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구성원 중 전체 사내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 점검	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사내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table>
<tr><td></td><td>[데이터 산식]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 = Σ(출석한 사내 이사 인원 수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5% 미만인 경우
2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5% 이상 5% 미만인 경우
3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5% 이상 0% 미만인 경우
4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0% 이상 5% 미만인 경우
5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5% 이상인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상법」에서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출석률은 이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특히 「상법」제393조 제4항은 “이사는 월에 회 이상 업무의 진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사내이사’와 보고받는 ‘사외이사’가 년 동안 최소 회는 이사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사회 참여는 법/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관주의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의 자율사항이다. 따라서 사내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여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내이사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사내이사가 준수해야 할 최소 회의 참석률을 설정하는 방식, 2) 사내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타 직무 수를 제한하는 방식, 3)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여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
- 조직은 사내이사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내이사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상정한다든지, 사내이사가 조직경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사회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유인을 통해 사내이사가 이사회 참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분류번호</th><th>영역</th><th>범주</th></tr>
<tr><td>G-2-3</td><td>지배구조</td><td>이사회 활동</td></tr>
<tr><td>항목</td><td colspan="3">이사회 산하 위원회</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권한 및 역할의 일부를 산하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지, 각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지를 확인
• 조직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수와 종류는 다양하며, 각 조직의 경영방식 및 사업환경에 따라 위원회 수를 달리할 수 있음. 따라서 이사회 산하 위원회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
1) 위원회 운영규정 도입, 2) 위원회 구성원 중임, 3) 위원회 구성 독립성
4) 위원회 개최 횟수, 5) 위원회 상정 안건
[데이터 원천]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 구성현황, 활동내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요건1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 설치는 정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에 대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요건2
특정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건3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직전 회계연도 중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최 횟수가 평균적으로 3회 이상인 경우
요건5
직전 회계연도 중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가 심의/의결 안건을 다룬 경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
<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의 모든 중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사안이나, 안건 심의에 있어 독립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상법」제393조의2에서는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위임이 가능하다. 즉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상법」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포함하도록 요구함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도록 함

•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필요로 인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조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위원회가 위임받은 권한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 특정 이사 중임 배제 : 이사회 구성원 중 특정 이사가 모든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이사는 전문성이 없거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 위원회가 위임받은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의결하기 위한 필요사항임
- 연간 3회 이상 개최 : 이사회가 산하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수의 안건을 모든 이사가 검토하는데 따른 비효율성 때문임.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적을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 필요함
- 안건 심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따라서 단순히 안건을 보고받는 것을 넘어,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2-4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항목	이사회 안건 처리		
항목 설명	• 이사회 구성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독립적/전문적/다양한 시각으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나, 특히 조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확인 •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중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이나 원안에 반대한 이사, 그리고 가결되지 않거나 안건에 반대한 사유를 점검		
성과 점검	이사회 활동 내역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전체 안건 중 수정, 보완 및 반대 의견이 나타난 안건의 비율을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데이터 기간] 지난 1개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수정, 보완 및 반대 의견이 나타난 안건 수 / 전체 이사회 상정 안건 수		

점검 기준	**1단계**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도 없는 경우 **2단계**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 **3단계**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반대하는 의견이 % 이상 존재하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본 항목은 '이사회 구성원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한 항목으로써, 전체 이사회 안건 처리 중 수정/부결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外 1)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한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의사록 上논의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2) 이사회 구성원의 안건 검토를 위한 개별 자료제공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이사들이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경영진들 및 실무진의 보고, 개인적인 조사, 실적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회 회의에서 반영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이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3-1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주주총회 소집 공고		
항목 설명	•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 전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일자, 장소, 안건, 기타 재무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다양한 채널로 전달하는지 확인 • 조직이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는 방법을 점검		
성과 점검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外 다음의 방식에 따른 공고 1) 조직의 사업장 게시판, 2) 조직의 온라인 홈페이지, 3) 명의개서대행사, 4) 일간지(신문), 5) 전자공시시스템, 6) 기타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table>
<tr><td></td><td>[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서면으로만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만 하는 경우
2단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1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3단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2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4단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3개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5단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 外 4개 이상의 추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기업은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하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상법」제363조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4)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조직은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안건에 대해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상법」제363조1항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주주총회일 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은 주주가 안건을 분석 및 판단하는데 있어 주라는 시간이 짧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일 주 전보다 긴 시점에 소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se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주주총회 개최일 28일 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주주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또한, 조직은 주주총회 소집 전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유용한 정보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제31조항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주 전까지 전자문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은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주주 또는 의결권자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G-3-2</td><td>지배구조</td><td>주주권리</td></tr>
<tr><td>항목</td><td colspan="3">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주주를 포함한 주주총회 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조직이 고려한 요소를 측정
[데이터 원천] 주주총회 개최일, 주주총회 개최 계획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요건1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재무결산 및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고려함
요건2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조직의 연간 업무계획 및 경영진 등의 업무일정을 고려함
요건3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연기금, 기관투자자, 의결권자문사 등의 주요 시장 참여자 의견을 수렴함
요건4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소액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함
요건5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을 고려함</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table>
<tr><td>1개 이하 충족</td><td>2개 충족</td><td>3개 충족</td><td>4개 충족</td><td>5개 충족</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기업은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하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상법」제363조에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3년간 지속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4)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국내의 경우 018년부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특정일에 집중되고 있는 국내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3-3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항목 설명	• 조직의 모든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에게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국내「상법」上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보호장치인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정관에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특히 이사회가 결의하여 '전자투표제'를 장려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의 정관, 이사회 결의사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table>
<tr><td></td><td>[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table>
<tr><td></td><td>집중투표제 도입(1/5)</td><td>서면투표제 도입(2/5)</td><td>전자투표제 도입(2/5)</td></tr>
<tr><td>1단계</td><td>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td><td>정관에서 서면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td><td>정관에서 전자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td></tr>
<tr><td>2단계</td><td>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명시하고 있다.</td><td>정관에서 서면투표제를 명시하고 있다.</td><td>정관에서 전자투표제를 명시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도입하고 있다.</td></tr>
</table>
</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집중전자서면 투표제’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집중투표제 단계별 배점 * 1/5) + (서면투표제 단계별 배점 * 2/5) + (전자투표제 단계별 배점 * 2/5)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r>
<tr><td>0점</td><td>100점</td></tr>
</table>
</td></tr>
</table>

추가 설명

- 조직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행사, 재산 보호, 이해관계 대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는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있다. 주주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결집하여 반영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견제/감독도 수월해지게 된다. 또한, 조직은 주주총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인 CGN이 014년 발표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언」에서는 조직이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함
  - 단, 「상법」제368조의3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주의 의결권 행사 용이성에 대해 조직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 주주가 직접적으로 조직의 경영현황을 보고받거나, 조직의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주주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이사를 통해 조직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이사는 조직의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장치가 ‘집중투표제’이다. 조직이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의안분석기관인 ISS가 2012년 공개한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

는 안건에는 찬성투표를 할 것과,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는 반대투표를 하도록 권고함

- 한편, 「상법」 제542조의7는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데 있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조직이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용이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상대적 비교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국내 동종산업 및 경쟁조직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과 비교하는 방식, 2) 「상법」外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자문기관 및 의안분석기관의 권장사항과 비교하는 방식

• 조직은 경영 안정성과 장기적 성장을 위해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조직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유 또는 도입을 하였을 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사유로는 1)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2) 조직이 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사업연속성 저하, 3)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의도적인 이사회 운영 방해 등이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3-4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배당정책 및 이행		
항목 설명	• 조직이 주주가치 증진 및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배당 관련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게 안내하고, 적절하게 배당을 실시했는지 확인 • 주주에게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을 충실히 통지함과 동시에,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에 따라 실제 배당을 진행하였는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이 직전 회계연도에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을 충실히 통지하였는지, 또한 통지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에 따라 실제 배당을 집행하였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배정정책, 현금현물배당결정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1단계** 주주에게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단계** 주주에게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을 연 회 이상 통지한 경우 **3단계** 주주에게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을 연 회 인상 통지하였으며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대로 배당을 집행한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배당정책이란 조직의 향후 배당목표에 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설명으로서, 배당수준의 유지, 확대, 축소에 관한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된 재무지표와 이를 산출한 방법, 기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당해연도 배당계획에는 아래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배당규모 :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 배당성향 : 배당수준 유지, 확대, 축소
  - 배당형태 : 현금배당, 주식배당, 기타 현물배당
  - 배당시기 :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 조직의 단순한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증가는 주주가치 증진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다. 해당 항목은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준비기간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이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그리고 이러한 배당정책을 수립한 사유 등의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조직의 배당정책은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되는 것으로 배당정책에는 해당 요소들에 관한 조직의 정보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1. 현재/미래 이익과 현금흐름	5. 국내외 경제상황(무역수지, 금리수준)
2. 투자집행 계획(투자규모, 투자기회)	6. 주주의 특성(배당선호도, 기관투자자 비중)
3. 자금조달 계획(외부조달 비용, 추가자금 필요성)	7. 동종산업 관행(배당성향 및 배당수준)
4. 재무건선성(부채비율, 유동성 수준)	8. 조직 이미지 변화(평판 및 주가영향)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정기공시), '전자공시시스템' 上 현금현물배당결정(거래소 수시공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4-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항목 설명	• 조직이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의 수수,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제품/서비스 책임 소홀, 구성원 상호간 모독 및 비하, 기타 사회적 책임 등)를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및 투명성 관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윤리규범 위반 행위와 개선활동을 대외공시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이 지난 1개년에 발생한 윤리규범 위반 건수 및 관련 구성원 수, 윤리규범 위반 내용,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관련 구성원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을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윤리규범 위반 내역 및 조치경과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요건1** 윤리규범 위반 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2** 윤리규범 위반한 구성원 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한 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된 구성원 처분내역(인사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5** 윤리규범 위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선택 항목의 합산값으로 평가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윤리규범이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조직에 속한 구성원 및 해당 조직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방식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지칭한다. 조직마다 윤리규범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며,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행동규범, 청렴규범 등의 용어가 존재한다.
- 윤리규범 위반이란 조직이 제정한 윤리규범에서 다루는 행동방식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적 윤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통칭한다. 이러한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 상충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직무권한 및 지위 남용
공정거래 미준수 행위	부정경쟁 행위	자금세탁방지 위반
중요정보 관리 위반 행위	내부정보 무단 활용 행위	품질기준 저해 행위
괴롭힘 및 차별 행위	기타. 반환경적/반사회적 행위	

- 윤리규범 위반 사건은 1) 조직의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2) 조직 내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거나, 3)조직과 관련된 외부기관(ex.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중 조직의 윤리심의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된 건으로 한다.

- 조직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법규나 규제를 위반해 발생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인 손실만큼, 조직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도 재무적 손해 및 기업명성 하락 등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조직은 윤리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의 법률 및 윤리 리스크 관리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1) 조직에서 과거년도 발생한 윤리위반 건수 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윤리위반 발생 건수 경계선 대비,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 등이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윤리경영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지속가능경영보고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분류번호</td><td>영역</td><td>범주</td></tr>
<tr><td>G-5-1</td><td>지배구조</td><td>감사기구</td></tr>
<tr><td>항목</td><td colspan="3">내부감사부서 설치</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3">• 조직의 재무, 회계, 감사 관련 부정사안, 기타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 조직이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td></tr>
<tr><td>성과
점검</td><td colspan="3">조직의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내부감사부서 등 조직도 및 업무분장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 colspan="3">1단계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거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업무분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부서 및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3단계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나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감사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단계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감사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5단계
감사위원회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별도 전담부서 또는 업무분장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td></tr>
<tr><td colspan="3">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r>
<tr><td>0점</td><td>25점</td><td>50점</td><td>75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 조직의 회계, 재무, 감사에 관한 감독 등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 일상적인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조직의 회계, 재무, 감사에 관한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 설치는 필요하다.
- 국내 「상법」에서는 상장회사 등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역할을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6항 :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 조직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표준예시」에서는 감사위원회 전속 감사부서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때, 감사부서에 속한 인력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부설기구 및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해석할 수 있다.
  1)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란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그 밖의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내부감사인력이 될 수 없다.
     -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자
     -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5-2	지배구조	감사기구
항목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항목 설명	• 조직의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거시경제 흐름 및 업종동향에 대한 직관, 상법 등 관련 법률 소양, 회계/재무/감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국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조건을 상회하여,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지 점검		

<table>
<tr><td>성과
점검</td><td>조직의 지난 1개년도 감사위원회 구성원(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 중「상법」및「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
[데이터 원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 구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td></tr>
<tr><td rowspan="2">점검
기준</td><td>1단계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이 명 선임되어 있는 경우
2단계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명 이상 선임되어 있으나 전체 감사위원 중 0% 이하인 경우
3단계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명 이상 선임되어 있으며 전체 감사위원 중 0% 초과한 경우</td></tr>
<tr><td>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tr><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
<tr><td>0점</td><td>50점</td><td>100점</td></tr>
</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감사위원회의 기본적 업무는 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조직과 이해관계 상충이 없다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회계, 재무, 감사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감독하는 업무이므로, 회계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
- 국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상법」제542조의11 및「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 「상법」 제542조의11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 「상법」및「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조직은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감사위원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감사위원회 전문성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1) 동종산업 내 감사위원회 구성원 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감사위원회 전문성 수준 대비, 3) 기타 주무관청 및 산업표준이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지침 대비 비교 등이 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의 감사위원회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6-1	지배구조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항목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항목 설명	• 조직이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최고 거버넌스 운영,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배구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 및 활동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 •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점검		
성과 점검	지난 4개년 간 조직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Σ(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 기준	**유형 1** 지난 4개년 간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 2** 지난 4개년 간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의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 3** 지난 4개년 간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지배구조 법/규제 위		

<table>
<tr><td></td><td>반의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감점 사항이 없을 경우, 본 항목의 점수는 100점으로 산정. 최저점은 0점으로 제한</td></tr>
<tr><td></td><td>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table><tr><td>유형 1</td><td>유형 2</td><td>유형 3</td></tr><tr><td>-50점</td><td>-30점</td><td>-10점</td></tr></table></td></tr>
</table>

추가 설명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은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이에 준하는 기타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주주권리 보호',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경영정보 공시' 요건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주주권리 보호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
  -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 5% 이상 지분율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주식 취득 및 소유 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계열회사 출자총액/지급보증/담보제공 등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외이사 선임, 여성(남성) 이사 선임, 경영진 보수정보 등
  -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 감사위원회 구성원 독립성, 전문성 등
  - 경영정보 공시 : 정기/수시/자진/정정 공시, 기타 중요 사업변동에 관한 사항 공시 등
- 조직은 확정판결된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 이상인 경우)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건수 外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 영향이나 평판에 영향을 끼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산업, 경쟁조직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3일(월)	11월 4일(화)	11월 5일(수)	11월 6일(목)	11월 7일(금)
미 달 러 (USD)	1427,40	1429.00	1437.70	1447.00	1445.60
위 안 화 (CNH)	200,76	200.62	201.90	202.91	202.87
일 본 엔 (JPY)	926.10	926.69	935.61	939.43	944.87
유 로 화 (EUR)	1646.72	1646.14	1650.91	1663.25	1669.45
영 국 파 운 드 (GBP)	1875.82	1877.35	1871.81	1888.26	1898.80
캐 나 다 달 러 (CAD)	1018.63	1016.65	1019.32	1025.66	1024.01
홍 콩 달 러 (HKD)	183.68	183.86	184.94	186.12	185.91

통 화 명	11월 10일(월)	11월 11일(화)	11월 12일(수)	11월 13일(목)	11월 14일(금)
미 달 러 (USD)	1454.00	1435.70	1463.20	1466.40	1469.50
위 안 화 (CNH)	204.45	204.19	205.53	206.16	206.48
일 본 엔 (JPY)	945.54	943.26	949.33	947.75	950.67
유 로 화 (EUR)	1679.15	1680.40	1694.75	1700.00	1708.96
영 국 파 운 드 (GBP)	1991.79	1915.54	1924.03	1925.53	1933.49
캐 나 다 달 러 (CAD)	1035.47	1036.84	1043.91	1046.64	1047.06
홍 콩 달 러 (HKD)	186.96	187.00	188.27	188.70	189.11

통 화 명	11월 17일(월)	11월 18일(화)	11월 19일(수)	11월 20일(목)	11월 21일(금)
미 달 러 (USD)	1458.50	1458.30	1465.20	1465.00	1468.40
위 안 화 (CNH)	204.86	205.30	206.23	206.10	206.32
일 본 엔 (JPY)	944.10	939.51	942.13	932.76	933.03
유 로 화 (EUR)	1695.29	1690.46	1696.77	1690.54	1692.40
영 국 파 운 드 (GBP)	1920.48	1918.47	1926.52	1912.70	1919.20
캐 나 다 달 러 (CAD)	1040.08	1037.79	1047.69	1043.15	1041.64
홍 콩 달 러 (HKD)	187.65	187.58	188.22	188.08	188.64

통 화 명	11월 24일(월)	11월 25일(화)	11월 26일(수)	11월 27일(목)	11월 28일(금)
미 달 러 (USD)	1472.00	1473.50	1473.50	1462.70	1464.80
위 안 화 (CNH)	206.82	207.46	207.78	206.93	207.05
일 본 엔 (JPY)	939.94	939.04	944.01	935.56	937.29
유 로 화 (EUR)	1694.42	1697.84	1704.99	1696.37	1699.17
영 국 파 운 드 (GBP)	1927.95	1931.54	1940.53	1937.13	1939.32
캐 나 다 달 러 (CAD)	1044.30	1044.44	1045.07	1041.55	1044.31
홍 콩 달 러 (HKD)	189.12	189.35	189.49	188.06	188.31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